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2021.08.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6호(2022.09.16.)로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1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용정리, 송능리, 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 면 적 : 9,376,908㎡(본단지 : 8,654,278㎡, 진건1·2 기업이전단지 : 722,630㎡)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정 관 (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전 형 수 (직무대행)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 10월 15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8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654,27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136,584	24.6	
	단독주택	181,480	2.1	15개소
	공동주택(연립)	18,603	0.2	1개소
	공동주택(아파트)	1,881,307	21.7	공공39개소, 민간22개소
	근린생활시설	55,194	0.6	20개소

(표계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517,694	75.4		
	주거유형복합	70,664	0.8	3개소(민간)	
	주상복합	224,784	2.6	10개소(민간)	
	상업시설	126,640	1.5	24개소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1,025,933	11.9	
		자족복합	85,579	1.0	5개소(민간)
		자족시설	224,049	2.6	12개소
		업무시설	134,484	1.6	12개소
		공공복합	59,245	0.7	4개소(공공)
		유보지(복합형)	55,483	0.6	3개소
		문화시설	21,851	0.3	4개소
		커뮤니티시설	11,137	0.1	7개소
		보육시설	1,202	0.0	2개소
		공공업무시설	38,988	0.5	6개소
		산업시설	298,156	3.4	12개소
		산업복합	75,600	0.9	4개소
		산업지원시설	20,159	0.2	5개소
	공원 녹지	소 계	3,001,045	34.7	
		공원	1,841,643	21.3	근17, 어12, 소8, 수변8, 문화9
		녹지	451,093	5.2	완충15, 경관1, 연결38
		광장	7,209	0.1	2개소
		공공공지	15,801	0.2	24개소
		보행자전용도로(10M)	6,823	0.1	
		하천	678,476	7.8	3개소
		교육시설	335,609	3.9	초11, 중6, 고3, 특수1, 유9
		집단에너지시설	27,178	0.3	1개소
		자원순환센터	(7,609)	(0.1)	공원중복결정 1개소
		쓰레기소각시설	(9,016)	(0.1)	공원중복결정 1개소
		전기공급설비	7,526	0.1	변전소 2개소, CH 2개소
		수도시설	21,377	0.2	철도, 도로, 공원, 하천 중복제외
		유수지	(150,186)	(1.7)	저류시설(공원 중복결정 5개소)
		종교시설	15,829	0.2	10개소
주차장		59,760	0.7	35개소	
주유소		21,861	0.3	11개소	
도로 및 철도		소 계	1,579,488	18.2	
		도로	1,287,089	14.9	공원, 하천 등 중복결정 면적 제외
	보행자도로	26,584	0.3		
	교통광장	192,602	2.2	국도·지방도 교차구간(10개소)	
	철도	73,213	0.8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 125,335인(인구밀도 145인/ha)

※ 2035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5인/호), 행복주택은 가구당 인구 1.6인/호 적용

○ 변경 : 130,988인(인구밀도 151인/ha) 증) 5,653인

※ 2035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5인/호)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 53,534호(단독주택 647호, 연립주택 124호, 공동주택 44,042호, 복합시설 8,721호)

○ 변경 : 52,380호(단독주택 647호, 연립주택, 118호, 공동주택 42,534호, 복합시설 9,081호) 감) 1,154호

구 분	면적(m ²)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521,662	2,521,662	-	53,534	52,380	감)1,154	125,335	130,988	증)5,653	[단독 : 공동(복합시설 포함)] - 기정 : 1.2% : 98.8% - 변경 : 1.2% : 98.8%
단독주택	181,480	181,480	-	647	647	-	1,622	1,622	-	
일반형	103,038	103,038	-	367	367	-	921	921	-	주거전용
	78,442	78,442	-	280	280	-	701	701	-	점포겸용
연립주택	18,603	18,603	-	124	118	감) 6	310	295	감) 15	
공동주택	1,881,307	1,881,307	-	44,042	42,534	감)1,508	103,152	106,362	증)3,210	
60m ² 이하	754,226	833,934	증)79,708	23,737	24,612	증) 875	52,379	61,543	증)9,164	
60~85m ² 이하	874,309	757,829	감)116,480	16,718	13,874	감)2,844	41,801	34,695	감)7,106	[건설호수 비율] - 기정 60m ² 이하 : 60~85m ² 이하 : 85m ² 초과 = 48.3% : 41.6% : 10.1%
85m ² 초과	252,772	289,544	증)36,772	3,587	4,048	증) 461	8,972	10,124	증)1,152	
복합시설	440,272	440,272	-	8,721	9,081	증) 360	20,251	22,709	증)2,458	- 변경
60m ² 이하	59,245	59,245	-	1,727	2,159	증) 432	2,762	5,399	증)2,637	60m ² 이하 : 60~85m ² 이하 : 85m ² 초과 = 51.9% : 36.8% : 11.3%
60~85m ² 이하	247,315	247,315	-	5,232	5,122	감) 110	13,082	12,808	감) 274	
85m ² 초과	133,712	133,712	-	1,762	1,800	증) 38	4,407	4,502	증) 95	

주) 복합시설의 건설호수는 주거유형복합, 주상복합, 자족복합, 공공복합의 건설호수임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2,521,662	-	-	53,534	100.0	125,335	-	
단독 주택	소 계	181,480	-	-	647	1.2	1,622	-	
	일반형	103,038	180	265	367	0.7	921	주거전용	
	점포형	78,442	200	280	280	0.5	701	점포겸용	
연립 주택	소 계	18,603	-	-	124	0.2	310	-	
	D-1 60~85㎡ 이하	18,603	100	105	124	0.2	310	민간분양	
공동 주택	소 계	1,881,307	-	-	44,042	82.3	103,152	-	
	A-1 60㎡ 이하	28,148	195	85	638	1.2	1,595	공공분양	
	A-2 60㎡ 이하	소계	22,558	-	-	620	1.2	1,551	-
			14,888	220	80	409	0.8	1,023	신혼희망(공공분양)
		7,670	220	80	211	0.4	528	신혼희망(행복주택)	
	A-3 60㎡ 이하	14,784	190	48	585	1.1	936	통합공공임대	
	A-4 60㎡ 이하	소계	36,886	-	-	1,398	2.6	3,496	-
			18,443	195	45	799	1.5	1,998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포함)
		18,443	195	60	599	1.1	1,498	통합공공임대	
	A-5 60㎡ 이하	소계	38,005	-	-	1,441	2.7	3,603	-
			19,003	195	45	823	1.5	2,058	통합공공임대
		19,002	195	60	618	1.2	1,545		
	A-6 60㎡ 이하	소계	42,051	-	-	1,156	2.1	2,891	-
			27,754	220	80	763	1.4	1,908	신혼희망(공공분양)
		14,297	220	80	393	0.7	983	신혼희망(행복주택)	
	A-7 60㎡ 이하	소계	18,798	-	-	670	1.3	1,340	-
			9,399	190	60	298	0.6	745	통합공공임대
		9,399	190	48	372	0.7	595		
	A-8 60㎡이하	소계	34,656	-	-	1,235	2.3	2,471	-
			17,328	190	60	549	1.0	1,373	통합공공임대
		17,328	190	48	686	1.3	1,098		
	A-9 60㎡ 이하	소계	27,593	-	-	741	1.4	1,853	-
			18,211	215	80	489	0.9	1,223	신혼희망(공공분양)
		9,382	215	80	252	0.5	630	신혼희망(행복주택)	
	A-10 60㎡ 이하	22,212	215	48	995	1.9	1,592	통합공공임대	
	A-11 60㎡ 이하	소계	18,137	-	-	671	1.2	1,678	-
			9,069	190	45	384	0.7	960	통합공공임대
		9,068	190	60	287	0.5	718		
	A-12 60㎡ 이하	24,977	190	48	989	1.8	1,582	통합공공임대	
	A-13 60㎡ 이하	소계	37,416	-	-	1,029	2.0	2,573	-
			24,695	220	80	679	1.3	1,698	신혼희망(공공분양)
	12,721	220	80	350	0.7	875	신혼희망(행복주택)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32,649	-	-	898	1.7	2,246	-
	A-14 60㎡ 이하	21,548	220	80	593	1.1	1,483	신혼희망(공공분양)
		11,101	220	80	305	0.6	763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24,383	-	-	869	1.6	1,738	-
	A-15 60㎡ 이하	12,192	190	60	386	0.7	965	통합공공임대
		12,191	190	48	483	0.9	773	
	소계	31,948	-	-	1,180	2.2	2,950	-
	A-16 60㎡ 이하	15,974	190	45	674	1.3	1,685	통합공공임대
		15,974	190	60	506	0.9	1,265	
	소계	35,884	-	-	1,070	2.0	2,137	-
	A-17 60㎡ 이하	17,942	160	60	472	0.9	1,180	통합공공임대
		17,942	160	48	598	1.1	957	
	A-18 60㎡ 이하	20,043	190	48	793	1.5	1,269	통합공공임대
	소계	41,459	-	-	1,049	2.0	2,623	-
	A-19 60㎡ 이하	27,363	210	83	692	1.3	1,730	신혼희망(공공분양)
		14,096	210	83	357	0.7	893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40,896	-	-	961	1.8	2,403	-
	A-20 60㎡ 이하	26,991	195	83	634	1.2	1,585	신혼희망(공공분양)
		13,905	195	83	327	0.6	818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19,084	-	-	506	0.9	1,265	-
	A-21 60㎡ 이하	12,595	220	83	334	0.6	835	신혼희망(공공분양)
		6,489	220	83	172	0.3	430	신혼희망(행복주택)
	A-22 60㎡ 이하	23,318	195	48	947	1.8	1,515	통합공공임대
	소계	21,054	-	-	829	1.6	1,658	-
	A-23 60㎡ 이하	10,527	210	60	368	0.7	920	통합공공임대
		10,527	210	48	461	0.9	738	
	소계	26,755	-	-	602	1.1	1,506	-
	A-24 60㎡ 이하	17,658	190	83	397	0.7	993	신혼희망(공공분양)
		9,097	190	83	205	0.4	513	신혼희망(행복주택)
	A-25 60㎡ 이하	20,124	200	48	839	1.6	1,342	통합공공임대
B-1 60~85㎡ 이하	31,431	200	110	569	1.1	1,423	공공분양	
B-2 60~85㎡ 이하	34,012	190	110	587	1.1	1,468	공공분양	
B-3 60~85㎡ 이하	15,318	200	105	292	0.5	730	민간분양	
B-4 60~85㎡ 이하	13,437	180	105	230	0.4	575	민간분양	
B-5 60~85㎡ 이하	24,783	190	105	448	0.8	1,120	민간분양	
B-6 60~85㎡ 이하	34,428	210	105	689	1.3	1,723	민간분양	
B-7 60~85㎡ 이하	28,815	210	105	576	1.1	1,440	민간분양	
B-8 60~85㎡ 이하	42,914	220	105	899	1.7	2,248	민간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B-9	60~85㎡ 이하	36,296	200	112	648	1.2	1,620	민간분양
	B-10	60~85㎡ 이하	37,666	180	105	646	1.2	1,615	민간분양
	B-11	60~85㎡ 이하	21,872	195	110	388	0.7	970	공공분양
	B-12	60~85㎡ 이하	38,807	200	112	693	1.3	1,733	민간분양
	B-13	60~85㎡ 이하	26,266	220	112	516	1.0	1,290	민간분양
	B-14	60~85㎡ 이하	42,835	220	105	897	1.7	2,243	민간분양
	B-15	60~85㎡ 이하	27,052	220	105	567	1.1	1,418	민간분양
	B-16	60~85㎡ 이하	20,574	220	105	431	0.8	1,078	민간분양
	B-17	60~85㎡ 이하	29,201	195	110	507	0.9	1,268	공공분양
	B-18	60~85㎡ 이하	25,369	220	105	532	1.0	1,330	민간분양
	B-19	60~85㎡ 이하	28,770	220	105	603	1.1	1,508	민간분양
	C-1	85㎡ 초과	47,228	180	140	607	1.2	1,518	민간분양
	C-2	85㎡ 초과	24,505	200	140	350	0.7	875	민간분양
	C-3	85㎡ 초과	27,130	200	140	388	0.7	970	민간분양
	C-4	85㎡ 초과	17,880	180	140	230	0.4	575	민간분양
		소계	31,255	-	-	599	1.1	1,498	-
	S-1	60~85㎡ 이하	20,628	220	105	432	0.8	1,080	민간분양
		85㎡ 초과	10,627	220	140	167	0.3	418	민간분양
		소계	37,916	-	-	645	1.2	1,613	-
	S-2	60~85㎡ 이하	25,025	195	105	465	0.9	1,163	민간분양
		85㎡ 초과	12,891	195	140	180	0.3	450	민간분양
		소계	32,830	-	-	629	1.1	1,573	-
	S-3	60~85㎡ 이하	21,668	220	105	454	0.8	1,135	민간분양
		85㎡ 초과	11,162	220	140	175	0.3	438	민간분양
		소계	35,134	-	-	643	1.2	1,608	-
	S-4	60~85㎡ 이하	23,188	210	105	464	0.9	1,160	민간분양
		85㎡ 초과	11,946	210	140	179	0.3	448	민간분양
		소계	75,763	-	-	1,386	2.6	3,465	-
S-5	60~85㎡ 이하	50,004	210	105	1,000	1.9	2,500	민간분양	
	85㎡ 초과	25,759	210	140	386	0.7	965	민간분양	
	소계	49,682	-	-	881	1.6	2,203	-	
S-6	60㎡ 이하	24,841	170	85	497	0.9	1,243	공공분양	
	60~85㎡ 이하	24,841	170	110	384	0.7	960	공공분양	
	소계	39,317	-	-	685	1.3	1,713	-	
S-7	60~85㎡ 이하	25,949	200	105	494	0.9	1,235	민간분양	
	85㎡ 초과	13,368	200	140	191	0.4	478	민간분양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33,816	-	-	649	1.2	1,623	-	
	S-8	60~85㎡ 이하	22,319	220	105	468	0.9	1,170	민간분양
		85㎡ 초과	11,497	220	140	181	0.3	453	민간분양
	소계	57,789	-	-	1,108	2.1	2,771	-	
	S-9	60~85㎡ 이하	38,141	220	105	799	1.5	1,998	민간분양
		85㎡ 초과	19,648	220	140	309	0.6	773	민간분양
	소계	26,602	-	-	463	0.8	1,158	-	
	S-10	60~85㎡ 이하	17,557	200	105	334	0.6	835	민간분양
		85㎡ 초과	9,045	200	140	129	0.2	323	민간분양
	소계	29,071	-	-	546	1.0	1,365	-	
	S-11	60㎡ 이하	14,536	180	85	308	0.6	770	공공분양
		60~85㎡ 이하	14,535	180	110	238	0.4	595	공공분양
	소계	22,061	-	-	391	0.7	978	-	
	S-12	60㎡ 이하	11,031	170	85	221	0.4	553	공공분양
		60~85㎡ 이하	11,030	170	110	170	0.3	425	공공분양
	소계	29,664	-	-	413	0.8	1,033	-	
S-13	60~85㎡ 이하	19,578	160	105	298	0.6	745	민간분양	
	85㎡ 초과	10,086	160	140	115	0.2	288	민간분양	
소계	224,784	-	-	5,507	10.3	13,769	-		
주상 복합	M-1	60~85㎡ 이하	25,295	350	107	662	1.2	1,655	민간분양
	M-2	60~85㎡ 이하	19,305	300	114	406	0.8	1,015	민간분양
	M-3	85㎡ 초과	19,219	350	145	371	0.7	928	민간분양
	M-4	85㎡ 초과	21,327	350	145	412	0.8	1,030	민간분양
	소계	16,957	-	-	347	0.7	868	-	
	M-5	60~85㎡ 이하	11,192	300	107	251	0.5	628	민간분양
		85㎡ 초과	5,765	300	143	96	0.2	240	민간분양
	소계	24,511	-	-	670	1.2	1,675	-	
	M-6	60~85㎡ 이하	16,177	400	107	484	0.9	1,210	민간분양
		85㎡ 초과	8,334	400	143	186	0.3	465	민간분양
	소계	24,715	-	-	676	1.2	1,690	-	
	M-7	60~85㎡ 이하	16,312	400	107	488	0.9	1,220	민간분양
		85㎡ 초과	8,403	400	143	188	0.3	470	민간분양
	M-8	60~85㎡ 이하	17,887	400	107	535	1.0	1,338	민간분양
	M-9	60~85㎡ 이하	40,701	350	109	1,046	2.0	2,615	민간분양
	M-10	60~85㎡ 이하	14,867	350	109	382	0.7	955	민간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소계		59,245	-	-	1,727	3.2	2,762	-					
공공 복합	PM-1	60㎡ 이하	14,194	250	60	414	0.8	662	행복주택				
	PM-2	60㎡ 이하	16,707	250	60	487	0.9	779	행복주택				
	PM-3	60㎡ 이하	19,006	250	60	554	1.0	886	행복주택				
	PM-4	60㎡ 이하	9,338	250	60	272	0.5	435	행복주택				
소계		85,579	-	-	978	1.8	2,446	-					
자족 복합	IM-1	60~85㎡ 이하	16,278	300	105	186	0.3	465	민간분양				
	IM-2	60~85㎡ 이하	23,033	300	105	263	0.5	658	민간분양				
	IM-3	60~85㎡ 이하	16,533	300	105	189	0.4	473	민간분양				
	IM-4	60~85㎡ 이하	20,119	300	105	230	0.4	575	민간분양				
	IM-5	60~85㎡ 이하	9,616	300	105	110	0.2	275	민간분양				
소계		70,664	-	-	509	1.0	1,274	-					
주거 유형 복합	LM-1	저층형	85㎡ 초과	14,217	150	198	102	17	0.2	256	43	민간분양	
		중층형				140		24			0.05	60	민간분양
		고층형				140		61			0.1	153	민간분양
	LM-2	저층형	85㎡ 초과	28,094	150	198	202	34	0.4	505	85	민간분양	
		중층형				140		48			0.1	120	민간분양
		고층형				140		120			0.2	300	민간분양
	LM-3	저층형	85㎡ 초과	28,353	150	198	205	34	0.4	513	85	민간분양	
		중층형				140		49			0.1	123	민간분양
		고층형				140		122			0.2	305	민간분양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민간분양 중 B-9, B-12, B-13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4) A-4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 1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5)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6)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 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변경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2,521,662	-	-	52,380	100.0	130,988	-	
단독 주택	소 계	181,480	-	-	647	1.2	1,622	-	
	일반형	103,038	180	265	367	0.7	921	주거전용	
	점포형	78,442	200	280	280	0.5	701	점포겸용	
연립 주택	소 계	18,603	-	-	118	0.2	295	-	
	D-1 60~85㎡ 이하	18,603	100	110	118	0.2	295	민간분양	
공동 주택	소 계	1,881,307	-	-	42,534	81.2	106,362	-	
	A-1 60㎡ 이하	28,148	195	85	638	1.2	1,595	공공분양	
	A-2	소계	22,558	-	-	620	1.2	1,551	-
		60㎡ 이하	14,888	220	80	409	0.8	1,023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7,670	220	80	211	0.4	528	신혼희망(통합공임)
	A-3	소계	14,784	-	-	495	0.9	1,238	-
		60㎡ 이하	9,360	190	48	371	0.7	928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5,424	190	83	124	0.2	310	통합공공임대
	A-4 60㎡ 이하	13,437	180	85	285	0.5	713	공공분양	
	A-5	소계	15,318	-	-	546	1.0	1,366	-
		60㎡ 이하	10,110	200	48	421	0.8	1,053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5,208	200	83	125	0.2	313	통합공공임대
	A-6	소계	42,051	-	-	1,156	2.2	2,891	-
		60㎡ 이하	27,754	220	80	763	1.5	1,908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297	220	80	393	0.7	983	신혼희망(통합공임)
	A-7 60㎡ 이하	18,798	190	85	420	0.8	1,050	공공분양	
	A-8 60㎡ 이하	28,815	210	85	712	1.4	1,780	공공분양	
	A-9	소계	27,593	-	-	741	1.4	1,853	-
		60㎡ 이하	18,211	215	80	489	0.9	1,223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9,382	215	80	252	0.5	630	신혼희망(통합공임)
	A-10	소계	22,212	-	-	841	1.6	2,103	-
		60㎡ 이하	14,090	215	48	631	1.2	1,578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8,122	215	83	210	0.4	525	통합공공임대
	A-11	소계	18,137	-	-	609	1.2	1,523	-
		60㎡ 이하	11,530	190	48	457	0.9	1,143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607	190	83	152	0.3	380	통합공공임대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24,977	-	-	836	1.6	2,091	-	
	A-12	60㎡ 이하	15,850	190	48	627	1.2	1,568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9,127	190	83	209	0.4	523	통합공공임대
	A-13	60㎡ 이하	37,416	220	85	968	1.8	2,420	공공분양
	A-14	60㎡ 이하	26,602	200	85	626	1.1	1,565	공공분양
	소계	24,383	-	-	816	1.6	2,040	-	
	A-15	60㎡ 이하	15,460	190	48	612	1.2	1,53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8,923	190	83	204	0.4	510	통합공공임대
	A-16	60㎡ 이하	27,052	220	85	700	1.3	1,750	공공분양
	소계	17,880	-	-	568	1.1	1,420	-	
	A-17	60㎡ 이하	11,350	180	48	426	0.8	1,065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530	180	83	142	0.3	355	통합공공임대
	소계	20,043	-	-	671	1.3	1,678	-	
	A-18	60㎡ 이하	12,700	190	48	503	1.0	1,258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7,343	190	83	168	0.3	420	통합공공임대
	A-19	60㎡ 이하	41,459	210	85	1,024	2.0	2,560	공공분양
	소계	40,896	-	-	961	1.8	2,403	-	
	A-20	60㎡ 이하	26,991	195	83	634	1.2	1,585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3,905	195	83	327	0.6	818	신혼희망(통합공임)
	소계	19,084	-	-	739	1.4	1,848	-	
	A-21	60㎡ 이하	12,090	220	48	554	1.1	1,385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6,994	220	83	185	0.3	463	통합공공임대
	소계	23,318	-	-	801	1.5	2,003	-	
	A-22	60㎡ 이하	14,800	195	48	601	1.1	1,503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8,518	195	83	200	0.4	500	통합공공임대
	소계	21,054	-	-	779	1.5	1,948	-	
	A-23	60㎡ 이하	13,350	210	48	584	1.1	1,46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7,704	210	83	195	0.4	488	통합공공임대
	소계	26,755	-	-	602	1.1	1,506	-	
	A-24	60㎡ 이하	17,658	190	83	397	0.7	993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9,097	190	83	205	0.4	513	신혼희망(통합공임)
	소계	20,124	-	-	709	1.4	1,773	-	
	A-25	60㎡ 이하	12,770	200	48	532	1.0	1,33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7,354	200	83	177	0.3	443	통합공공임대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B-1	60~85㎡ 이하	31,431	200	110	569	1.1	1,423	공공분양
	B-2	60~85㎡ 이하	34,012	190	110	587	1.1	1,468	공공분양
	B-3	60~85㎡ 이하	26,266	220	110	525	1.0	1,313	민간분양
	B-4	60~85㎡ 이하	21,872	195	110	388	0.7	970	공공분양
	B-5	60~85㎡ 이하	24,783	190	110	428	0.8	1,070	민간분양
	B-6	60~85㎡ 이하	38,807	200	110	706	1.3	1,765	민간분양
	B-7	60~85㎡ 이하	39,317	200	110	715	1.4	1,789	민간분양
	B-8	60~85㎡ 이하	20,574	220	110	411	0.8	1,028	민간분양
	B-9	60~85㎡ 이하	36,296	200	110	660	1.3	1,650	민간분양
	B-10	60~85㎡ 이하	25,369	220	110	507	1.0	1,268	민간분양
	B-17	60~85㎡ 이하	29,201	195	110	507	1.0	1,268	공공분양
	C-1	85㎡ 초과	47,228	180	140	607	1.2	1,518	민간분양
	C-2	85㎡ 초과	24,505	200	140	350	0.7	875	민간분양
	C-3	85㎡ 초과	27,130	200	140	388	0.7	970	민간분양
	C-4	85㎡ 초과	37,666	180	140	484	0.9	1,210	민간분양
	S-1	소계	31,255	-	-	580	1.1	1,451	-
		60~85㎡ 이하	20,628	220	110	413	0.8	1,033	민간분양
		85㎡ 초과	10,627	220	140	167	0.3	418	민간분양
	S-2	소계	37,916	-	-	624	1.2	1,560	-
		60~85㎡ 이하	25,025	195	110	444	0.8	1,110	민간분양
		85㎡ 초과	12,891	195	140	180	0.3	450	민간분양
	S-3	소계	32,830	-	-	753	1.4	1,883	-
		60㎡ 이하	16,415	220	85	425	0.8	1,063	공공분양
		60~85㎡ 이하	16,415	220	110	328	0.6	820	공공분양
	S-4	소계	35,134	-	-	622	1.2	1,556	-
		60~85㎡ 이하	23,188	210	110	443	0.8	1,108	민간분양
85㎡ 초과		11,946	210	140	179	0.3	448	민간분양	
S-5	소계	75,763	-	-	1,341	2.6	3,353	-	
	60~85㎡ 이하	50,004	210	110	955	1.8	2,388	민간분양	
	85㎡ 초과	25,759	210	140	386	0.8	965	민간분양	
S-6	소계	49,682	-	-	712	1.4	1,781	-	
	60~85㎡ 이하	32,790	170	110	507	1.0	1,268	민간분양	
	85㎡ 초과	16,892	170	140	205	0.4	513	민간분양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38,005	-	-	1,099	2.1	2,748	-
	S-7							
	60㎡ 이하	16,220	195	48	659	1.3	1,648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9,350	195	83	220	0.4	550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2,435	195	110	220	0.4	550	통합공공임대
	소계	33,816	-	-	627	1.2	1,568	-
	S-8							
	60~85㎡ 이하	22,319	220	110	446	0.9	1,115	민간분양
	85㎡ 초과	11,497	220	140	181	0.3	453	민간분양
	소계	57,789	-	-	1,072	2.0	2,681	-
	S-9							
	60~85㎡ 이하	38,141	220	110	763	1.4	1,908	민간분양
	85㎡ 초과	19,648	220	140	309	0.6	773	민간분양
	소계	32,649	-	-	605	1.1	1,513	-
	S-10							
	60~85㎡ 이하	21,548	220	110	431	0.8	1,078	민간분양
	85㎡ 초과	11,101	220	140	174	0.3	435	민간분양
	소계	29,071	-	-	546	1.1	1,365	-
	S-11							
	60㎡ 이하	14,536	180	85	308	0.6	770	공공분양
	60~85㎡ 이하	14,535	180	110	238	0.5	595	공공분양
	소계	22,061	-	-	391	0.7	978	-
	S-12							
	60㎡ 이하	11,031	170	85	221	0.4	553	공공분양
	60~85㎡ 이하	11,030	170	110	170	0.3	425	공공분양
	소계	29,664	-	-	400	0.8	1,001	-
	S-13							
60~85㎡ 이하	19,578	160	110	285	0.5	713	민간분양	
85㎡ 초과	10,086	160	140	115	0.2	288	민간분양	
소계	42,835	-	-	1,398	2.6	3,495	-	
S-14								
60㎡ 이하	18,280	220	48	838	1.6	2,095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10,550	220	83	280	0.5	700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4,005	220	110	280	0.5	700	통합공공임대	
소계	34,656	-	-	686	1.4	1,716	-	
S-15								
60㎡ 이하	17,328	190	85	387	1.0	968	공공분양	
60~85㎡ 이하	17,328	190	110	299	0.4	748	공공분양	
소계	31,948	-	-	511	1.0	1,278	-	
S-16								
60~85㎡ 이하	21,086	190	110	364	0.7	910	민간분양	
85㎡ 초과	10,862	190	140	147	0.3	368	민간분양	
소계	35,884	-	-	853	1.6	2,133	-	
S-17								
60㎡ 이하	15,350	160	48	512	1.0	1,28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8,800	160	83	170	0.3	425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1,734	160	110	171	0.3	428	통합공공임대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36,886	-	-	1,067	2.0	2,668	-	
	S-18	60㎡ 이하	15,750	195	48	640	1.2	1,600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9,100	195	83	214	0.4	535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2,036	195	110	213	0.4	533	통합공공임대
	S-19	소계	34,428	-	-	610	1.1	1,525	-
		60~85㎡ 이하	22,722	210	110	434	0.8	1,085	민간분양
		85㎡ 초과	11,706	210	140	176	0.3	440	민간분양
	S-20	소계	42,914	-	-	1,401	2.7	3,503	-
		60㎡ 이하	18,350	220	48	841	1.6	2,103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10,580	220	83	280	0.5	700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3,984	220	110	280	0.5	700	통합공공임대
	S-21	소계	28,770	-	-	941	1.8	2,353	-
		60㎡ 이하	12,400	220	48	568	1.1	1,420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7,000	220	83	186	0.4	465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9,370	220	110	187	0.4	468	통합공공임대
소계	224,784	-	-	5,480	10.5	13,702	-		
주상 복합	M-1	60~85㎡ 이하	25,295	350	110	644	1.2	1,610	민간분양
	M-2	60~85㎡ 이하	19,305	300	110	421	0.8	1,053	민간분양
	M-3	85㎡ 초과	19,219	350	140	384	0.7	960	민간분양
	M-4	85㎡ 초과	21,327	350	140	427	0.8	1,068	민간분양
	M-5	소계	16,957	-	-	342	0.7	855	-
		60~85㎡ 이하	11,192	300	110	244	0.5	610	민간분양
		85㎡ 초과	5,765	300	140	98	0.2	245	민간분양
	M-6	소계	24,511	-	-	661	1.3	1,653	-
		60~85㎡ 이하	16,177	400	110	471	0.9	1,178	민간분양
		85㎡ 초과	8,334	400	140	190	0.4	475	민간분양
	M-7	소계	24,715	-	-	667	1.3	1,668	-
		60~85㎡ 이하	16,312	400	110	475	0.9	1,188	민간분양
		85㎡ 초과	8,403	400	140	192	0.4	480	민간분양
	M-8	60~85㎡ 이하	17,887	400	110	520	1.0	1,300	민간분양
	M-9	60~85㎡ 이하	40,701	350	110	1,036	2.0	2,590	민간분양
M-10	60~85㎡ 이하	14,867	350	110	378	0.7	945	민간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소계		59,245	-	-	2,159	4.1	5,399	-					
공공 복합	PM-1	60㎡ 이하	14,194	250	48	517	1.0	1,293	통합공공임대				
	PM-2	60㎡ 이하	16,707	250	48	609	1.2	1,523	통합공공임대				
	PM-3	60㎡ 이하	19,006	250	48	693	1.3	1,733	통합공공임대				
	PM-4	60㎡ 이하	9,338	250	48	340	0.6	850	통합공공임대				
소계		85,579	-	-	933	1.7	2,334	-					
자족 복합	IM-1	60~85㎡ 이하	16,278	300	110	178	0.3	445	민간분양				
	IM-2	60~85㎡ 이하	23,033	300	110	251	0.5	628	민간분양				
	IM-3	60~85㎡ 이하	16,533	300	110	180	0.3	450	민간분양				
	IM-4	60~85㎡ 이하	20,119	300	110	219	0.4	548	민간분양				
	IM-5	60~85㎡ 이하	9,616	300	110	105	0.2	263	민간분양				
소계		70,664	-	-	509	1.0	1,274	-					
주거 유형 복합	LM-1	저층형	85㎡ 초과	14,217	150	102	0.2	256	198	17	0.05	43	민간분양
		중층형	85㎡ 초과						140	24	0.05	60	민간분양
		고층형	85㎡ 초과						140	61	0.1	153	민간분양
	LM-2	저층형	85㎡ 초과	28,094	150	202	0.4	505	198	34	0.1	85	민간분양
		중층형	85㎡ 초과						140	48	0.1	120	민간분양
		고층형	85㎡ 초과						140	120	0.2	300	민간분양
	LM-3	저층형	85㎡ 초과	28,353	150	205	0.4	513	198	34	0.1	85	민간분양
		중층형	85㎡ 초과						140	49	0.1	123	민간분양
		고층형	85㎡ 초과						140	122	0.2	305	민간분양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3) 민간분양 중 B-3, B-6, B-9블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 4) S-18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 1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 5)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단,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경우 세대수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6)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7)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20개소	55,194	
근린생활시설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674-3 일원	1,612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185-1 일원	3,208	
	기정	3	진접읍 연평리 757 일원	3,916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428-7 일원	2,478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460-1 일원	2,868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293-12 일원	965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293-6 일원	1,973	
	기정	8	진접읍 내곡리 530-1 일원	4,312	
	기정	9	진접읍 내곡리 530-12 일원	3,596	
	기정	10	진건읍 신월리 220-2 일원	3,709	
	기정	11	진건읍 신월리 609-6 일원	2,068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477 일원	974	
	기정	13	진건읍 신월리 143-1 일원	473	
	기정	14	진건읍 신월리 143-8 일원	1,561	
	기정	15	진건읍 신월리 554 일원	4,832	
	기정	16	진건읍 신월리 351 일원	2,948	
	기정	17	진건읍 진관리 580-3 일원	3,669	
	기정	18	진건읍 진관리 170-4 일원	2,771	
	기정	19	진건읍 진관리 103-2 일원	2,883	
	기정	20	진건읍 사능리 612 일원	4,378	

라. 복합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13개소	295,448	
주거유형복합	기정	소계	3개소	70,664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483 일원	14,217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454-5 일원	28,094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54-2 일원	28,353	
주상복합	기정	소계	10개소	224,784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53-3 일원	25,295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60-5 일원	19,305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00 일원	19,219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406-1 일원	21,327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408-2 일원	16,957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410 일원	24,511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427 일원	24,715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443-2 일원	17,887	
	기정	9	진건읍 진관리 520 일원	40,701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544-6 일원	14,867		

마.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24개소	126,640
상업시설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69-1 일원	3,386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90 일원	2,499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74 일원	5,228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397 일원	1,754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405-3 일원	3,150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411 일원	1,882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418-1 일원	1,975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426-1 일원	2,934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395-2 일원	5,684
	기정	10	진건읍 신월리 405 일원	5,832
	기정	11	진건읍 신월리 417-2 일원	4,217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424-2 일원	4,473
	기정	13	진건읍 신월리 638-7 일원	3,586
	기정	14	진건읍 신월리 465 일원	3,582
	기정	15	진건읍 신월리 476-2 일원	2,782
	기정	16	진건읍 신월리 505-3 일원	2,782
	기정	17-1	진건읍 진관리 565-4 일원	10,821
	기정	17-2	진건읍 진관리 500 일원	9,657
	기정	17-3	진건읍 진관리 493-10 일원	8,373
	기정	17-4	진건읍 진관리 509-1 일원	10,983
	기정	18	진건읍 진관리 563-11 일원	13,025
기정	19	진건읍 진관리 산51-1 일원	9,088	
기정	20	진건읍 사능리 674-1 일원	4,470	
기정	21	진건읍 사능리 604-12 일원	4,477	

바.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76개소	1,025,933
자족복합	기정	소계	5개소	85,579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50-1 일원	16,278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365-19 일원	23,033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31-2 일원	16,533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581-7일원	20,119
	기정	5	진건읍 진관리 547-3일원	9,616
자족시설	기정	소계	12개소	224,049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645-1 일원	38,338
	기정	2	진접읍 연평리 650-1 일원	15,582
	기정	3	진접읍 연평리 675-1 일원	13,28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자족시설	기정	4	진접읍 연평리 683 일원	17,575
	기정	5	진접읍 연평리 705-1 일원	12,729
	기정	6	진접읍 연평리 758 일원	28,955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651-2 일원	12,199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628-9 일원	9,678
	기정	9	진건읍 진관리 산49-21 일원	19,241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230-1 일원	30,952
	기정	11	진건읍 진관리 226-1 일원	3,653
	기정	12	진건읍 사능리 산73-1 일원	21,863
업무시설	기정	소계	12개소	134,484
	기정	1	진건읍 진관리 646-2 일원	8,604
	기정	2	진건읍 진관리 640-3 일원	14,455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502-1 일원	6,681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191-2 일원	12,581
	기정	5	진건읍 진관리 198-2 일원	12,038
	기정	6	진건읍 진관리 91-2 일원	30,373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산30-1 일원	12,046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76-8 일원	2,880
	기정	9	진건읍 진관리 76-4 일원	10,820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44-3 일원	8,003
	기정	11	진건읍 사능리 674-1 일원	8,817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414-6 일원	7,186	
공공복합	기정	소계	4개소	59,245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132-1 일원	14,194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407-1 일원	16,707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38-2 일원	19,006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545-2 일원	9,338
유보지 (복합형)	기정	소계	3개소	55,483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483-4 일원	22,443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445-1 일원	9,381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산51-13 일원	23,659
문화시설	기정	소계	4개소	21,851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108-8 일원	3,767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368 일원	7,805
	기정	3	진접읍 신월리 413-5 일원	5,101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513-6 일원	5,17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커뮤니티시설	기정	소계	7개소	11,137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66-1 일원	2,053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108-12 일원	2,225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533-26 일원	1,417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135 일원	1,350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564 일원	1,618
	기정	6	진건읍 진관리 151 일원	1,038
	기정	7	진건읍 사능리 612 일원	1,436
보육시설	기정	소계	2개소	1,202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180 일원	594
	기정	2	진건읍 진관리 100-11 일원	608
공공업무시설	기정	소계	6개소	38,988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492 일원	2,205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232 일원	3,153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236 일원	4,038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449-1 일원	22,516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127 일원	5,832
	기정	6	진건읍 진관리 966-20 일원	1,244
산업시설	기정	소계	12개소	298,156
	기정	1	진건읍 진관리 703-3 일원	20,818
	기정	2	진건읍 진관리 693-3 일원	11,405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727-3 일원	23,646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720-3 일원	44,659
	기정	5	진건읍 진관리 산81-1 일원	18,198
	기정	6	진건읍 진관리 763-1 일원	30,350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산81-3 일원	30,788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산56-1 일원	51,111
	기정	9	진건읍 진관리 산59-1 일원	18,180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980-1 일원	7,249
	기정	11	진건읍 진관리 252 일원	7,292
	기정	12	진건읍 진관리 산20 일원	34,460
산업복합	기정	소계	4개소	75,600
	기정	1	진건읍 진관리 668-1 일원	14,899
	기정	2	진건읍 진관리 673-23 일원	25,601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687-5 일원	30,891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산49-2 일원	4,209
산업지원시설	기정	소계	5개소	20,159
	기정	1	진건읍 진관리 산81-1 일원	3,287
	기정	2	진건읍 진관리 479-49 일원	2,683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479-6 일원	3,467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산49-17 일원	5,395
	기정	5	진건읍 진관리 479-42 일원	5,327

사.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274	83,125	1,320,496	113	41,482	753,572	32	9,447	128,868	129	32,196	438,056
대로	13	22,296	484,002	2	6,214	204,911	-	-	-	11	16,082	279,091
중로	103	40,377	672,650	30	23,097	426,646	25	7,676	114,706	48	9,604	131,298
소로	158	20,452	163,844	81	12,171	122,015	7	1,771	14,162	70	6,510	27,667

주) 도로 결정(변경) 총괄면적은 공원·녹지·공공공지 등 기타시설과의 중복결정 면적 및 가각 면적 제외

나) 철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2개소	73,213	
철도	기정	1	경춘선	41,862	철도역사신설 (16,711m ²), 지하도로, 도로, 수도시설 중복결정 (2,324m ²)
	기정	2	사릉역	31,351	

다)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35개소	59,760
주차장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263-4 일원	1,623
	기정	2	진접읍 연평리 667 일원	1,242
	기정	3	진접읍 연평리 774-4 일원	1,798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98-24 일원	810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108-13 일원	1,654
	기정	6	진접읍 연평리 833-1 일원	885
	기정	7	진접읍 내곡리 93-16 일원	1,216
	기정	8	진접읍 내곡리 428-4 일원	967
	기정	9	진접읍 내곡리 462 일원	1,316
	기정	10	진건읍 신월리 296-1 일원	943
	기정	11	진접읍 내곡리 530-1 일원	1,692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216 일원	1,035
	기정	13	진접읍 내곡리 533-52 일원	949
	기정	14	진건읍 신월리 474-1 일원	1,318
	기정	15	진건읍 신월리 474-2 일원	1,318
	기정	16	진건읍 신월리 397 일원	1,404
	기정	17	진건읍 신월리 419 일원	1,363
	기정	18	진건읍 신월리 106-1 일원	1,602
	기정	19	진건읍 신월리 554-1 일원	1,052
	기정	20	진건읍 신월리 473-10 일원	901
	기정	21	진건읍 진관리 579-1 일원	1,149
	기정	22	진건읍 진관리 192-2 일원	1,036
	기정	23	진건읍 진관리 103-2 일원	1,404
	기정	24	진건읍 사능리 674-1 일원	1,525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주차장	기정	25	진건읍 사능리 612 일원	1,431
	기정	26	진건읍 사능리 604-12 일원	1,374
	기정	27	진건읍 사능리 산77-1 일원	1,617
	기정	28	진건읍 진관리 76-49 일원	1,399
	기정	29	진건읍 진관리 203-2 일원	4,157
	기정	30	진건읍 진관리 685-1 일원	4,905
	기정	31	진건읍 진관리 686-2 일원	3,624
	기정	32	진건읍 진관리 644-4 일원	3,155
	기정	33	진건읍 진관리 산81-1 일원	2,689
	기정	34	진건읍 진관리 산49-9 일원	3,478
	기정	35	진건읍 진관리 산59-1 일원	1,729

2) 공간시설 계획

가) 광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12개소	199,811	
교통광장	기정	소계	10개소	192,602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513 일원	37,899	하천, 지하도로 중복결정 (31,156m ²)
	기정	2	진접읍 내곡리438-3 일원	3,092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639-17 일원	41,381	지하도로, 수도시설 중복결정 (31,248m ²)
	기정	4	진건읍 진관리 749-2 일원	83,644	도로 중복결정 (29,630m ²)
	기정	26	진접읍 내곡리 277-4번지 일원	3,703	도로 중복결정 (3,703m ²)
	기정	111	진접읍 연평리 656-15 일원	1,515	
	기정	112	신월리 8-2전 일원	2,119	
	기정	113	진건읍 신월리 66-2 일원	2,409	
	기정	218	진건읍 진관리 33-12 일원	1,208	
	기정	302	진건읍 내각리 461-1 일원	15,632	
일반광장	기정	소계	2개소	7,209	
	기정	5	진건읍 진관리 78-16일원	3,121	사릉역 일원
	기정	6	진건읍 사능리 612 일원	4,088	사릉역 일원

나)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54개소	1,841,643	
근린공원	기정	소계	17개소	943,689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95 일원	85,748	유수지 중복결정 (10,029m ²)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110-2 일원	14,413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473 일원	19,021	지하도로 중복결정 (493m ²)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312-20 일원	24,437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250-5 일원	17,737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364 일원	111,541	유수지 중복결정 (15,184m ²)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264-2 일원	23,122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산11-6 일원	82,110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산22 일원	218,087	
	기정	10	진접읍 내곡리 533-44 일원	35,319	지하도로 중복결정 (1,669m ²)
	기정	11	진건읍 신월리 173 일원	34,50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근린공원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521 일원	22,498	
	기정	13	진건읍 신월리 143-20 일원	10,565	
	기정	14	진건읍 진관리 112-21 일원	10,591	
	기정	15	진건읍 진관리 694-2 일원	20,068	
	기정	16	진건읍 진관리 산42-1 일원	183,143	도로 중복결정 (7,384m ²)
	기정	17	진건읍 진관리 산19 일원	30,786	
소공원	기정	소계	8개소	16,992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838-1 일원	609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183-3 일원	762	
	기정	3	진건읍 진관리 579 일원	665	
	기정	4	진건읍 사능리 673 일원	502	
	기정	5	진건읍 사능리 672-2 일원	2,162	
	기정	6	진건읍 사능리 671-1 일원	1,378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716 일원	5,938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산56-1 일원	4,976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12개소	30,390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672 일원	1,529	
	기정	2	진접읍 연평리 739 일원	2,025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157 일원	2,545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376-4 일원	6,203	
	기정	5	진접읍 연평리 462-9 일원	1,658	
	기정	6	진접읍 내곡리 468-1 일원	1,506	
	기정	7	진접읍 내곡리 549-9 일원	1,527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167 일원	1,810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354-3 일원	5,370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966-5 일원	2,120	
	기정	11	진건읍 진관리 147 일원	1,500	
	기정	12	진건읍 진관리 109-13 일원	2,597	
수변공원	기정	소계	8개소	202,510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268-2 일원	11,312	지하도로 중복결정 (170m ²)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31-4 일원	49,932	지하도로 중복결정 (172m ²)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483-6 일원	24,431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507-10 일원	6,661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528-11 일원	12,450	지하도로 중복결정 (175m ²)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567 일원	50,408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140 일원	30,630	
	기정	8	진건읍 사능리 612 일원	16,68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문화공원	기정	소계	9개소	648,062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679-1 일원	13,010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67-3 일원	31,016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13 일원	60,905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445 일원	60,458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653 일원	392,074	지하도로, 우수지, 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219,933m ²)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455-1 일원	25,722	
	기정	7	진건읍 진관리 569-7 일원	50,763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200-2 일원	9,714	
	기정	9	진건읍 사능리 661 일원	4,400	

다)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54개소	451,093	
완충녹지	기정	소계	15개소	196,664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512-1 일원	46,890	지하도로, 수도시설 중복결정(2,350m ²)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453-2 일원	12,869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420-11 일원	13,883	
	기정	4	진접읍 연평리 804 일원	48,765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406-2 일원	11,724	
	기정	6	진접읍 내곡리 45-3 일원	1,390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612-4 일원	4,027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183-8 일원	1,392	
	기정	9	진접읍 연평리 645-4 일원	5,043	
	기정	10	진접읍 연평리 462-11 일원	1,639	
	기정	11	진건읍 신월리 263-8 일원	7,805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115-2 일원	11,565	
	기정	13	진건읍 진관리 562-4 일원	1,820	
	기정	14	진건읍 진관리 488-3 일원	1,491	
기정	15	진건읍 진관리 산60-1 일원	26,361		
경관녹지	기정	소계	1개소	647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583-8 일원	647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연결녹지	기정	소계	38개소	253,782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696-1 일원	2,960	
	기정	2	진접읍 연평리 723-1 일원	1,028	
	기정	3	진접읍 연평리 711 일원	1,089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252-2 일원	31,783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132 일원	39,913	지하도로 중복결정 (19,731m ²)
	기정	6	진접읍 연평리 829 일원	2,480	
	기정	7	진접읍 내곡리 19 일원	1,366	
	기정	8	진접읍 내곡리 29-3 일원	1,316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302-2 일원	6,705	
	기정	10	진건읍 신월리 257-1 일원	1,962	
	기정	11	진접읍 내곡리 486-9 일원	1,094	
	기정	12	진접읍 내곡리 408 일원	1,734	
	기정	13	진접읍 내곡리 533-9 일원	3,618	
	기정	14	진건읍 신월리 577-2 일원	1,245	
	기정	15	진건읍 신월리 438-2 일원	1,184	
	기정	16	진건읍 신월리 151 일원	1,140	
	기정	17	진건읍 신월리 127 일원	2,604	
	기정	18	진건읍 신월리 551 일원	3,978	
	기정	19	진건읍 진관리 645-3 일원	5,021	
	기정	20	진건읍 진관리 639-6 일원	2,512	도로 중복결정 (2,512m ²)
	기정	21	진건읍 진관리 산81-1 일원	5,536	
	기정	22	진건읍 진관리 703-1 일원	3,979	
	기정	23	진건읍 진관리 710-13 일원	2,538	
	기정	24	진건읍 진관리 477 일원	778	
	기정	25	진건읍 진관리 180-3 일원	1,691	
	기정	26	진건읍 진관리 159 일원	2,041	
	기정	27	진건읍 진관리 64-8 일원	1,530	
	기정	28	진건읍 사능리 674-1 일원	774	
	기정	29	진건읍 사능리 693-7 일원	710	
	기정	30	진건읍 진관리 107-29 일원	175	
	기정	31	진건읍 진관리 112-33 일원	189	
	기정	32	진건읍 사능리 672-2 일원	57	
	기정	33	진건읍 사능리 674-1 일원	112	
	기정	34	진건읍 사능리 672-2 일원	274	
	기정	35	진건읍 사능리 670-1 일원	112	
	기정	36	진건읍 사능리 668 일원	150	
	기정	37	진건읍 사능리 204-3 일원	117,979	도로 중복결정 (2,542m ²)
기정	38	진건읍 신월리 182-2 일원	425		

라)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24개소	15,801	
공공공지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68-4 일원	120	
	기정	2	진접읍 연평리 782-1 일원	149	
	기정	3	진접읍 연평리 782-1 일원	113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96-2 일원	1,172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100-12 일원	6,322	지하도로 중복결정 (4,385m ²)
	기정	6	진접읍 내곡리 89-1 일원	2,717	지하도로 중복결정 (1,887m ²)
	기정	7	진접읍 연평리 843-3 일원	148	
	기정	8	진접읍 연평리 842-5 일원	121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287-1 일원	149	
	기정	10	진건읍 신월리 293-3 일원	149	
	기정	11	진건읍 신월리 259-1 일원	169	
	기정	12	진건읍 신월리 259-1 일원	120	
	기정	13	진건읍 신월리 197 일원	113	
	기정	14	진건읍 신월리 213-1 일원	149	
	기정	15	진건읍 신월리 221 일원	113	
	기정	16	진접읍 내곡리 546-11 일원	1,154	
	기정	17	진건읍 신월리 162-1 일원	149	
	기정	18	진건읍 신월리 162-1 일원	113	
	기정	19	진건읍 신월리 471-2 일원	75	
	기정	20	진건읍 신월리 351도 일원	150	
	기정	21	진건읍 진관리 169 일원	149	
	기정	22	진건읍 진관리 609-38 일원	1,117	
	기정	23	진건읍 진관리 76-49 일원	441	
	기정	24	진건읍 진관리 46-29 일원	629	

3) 유통공급시설계획

가) 수도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1개소	21,377 (29,745)	
수도시설	기정	1	진건읍 진관리 479-47 일원	21,377 (29,745)	광장, 공원, 녹지, 도로, 지하도로, 철도, 하천 중복결정 (8,368m ²)

주) ()는 공원, 도로 등 중복결정 포함된 면적

나) 전기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4개소	7,526	
전기공급설비	기정	1	진관리 산59-1번지 일원	841	CH부지
	기정	2	내곡리 567-25번지 일원	782	CH부지
	기정	3	신월리 39-28번지 일원	2,926	변전시설
	기정	4	진관리 746번지 일원	2,977	변전시설

다) 집단에너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1개소	27,178	
집단에너지시설	기정	1	진관리 921-2번지 일원	27,17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가) 교육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30개소	335,609	
유치원	기정	소계	9개소	36,133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64-1 일원	4,002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158 일원	4,013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468-1 일원	4,001	
	기정	4	진접읍 내곡리 533-13 일원	4,038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167 일원	4,037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519 일원	4,001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106-7 일원	4,001	
	기정	8	진건읍 진관리 536 일원	4,008	
	기정	9	진건읍 진관리 175-3 일원	4,032	
초등학교	기정	소계	11개소	154,723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74-2 일원	15,001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108-30 일원	12,690	
	기정	3	진접읍 내곡리 466 일원	14,572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247 일원	15,000	
	기정	5	진접읍 내곡리 533-13 일원	13,365	
	기정	6	진건읍 신월리 167-2 일원	15,000	
	기정	7	진건읍 신월리 525-1 일원	14,500	
	기정	8	진건읍 신월리 94 일원	13,002	
	기정	9	진건읍 신월리 353-2 일원	13,001	
	기정	10	진건읍 진관리 599-1 일원	13,760	
기정	11	진건읍 진관리 177-1 일원	14,832		
중학교	기정	소계	6개소	84,651	
	기정	1	진접읍 내곡리 6 일원	14,200	
	기정	2	진건읍 신월리 246-7 일원	14,501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174 일원	14,000	
	기정	4	진건읍 신월리 507-1 일원	14,000	
	기정	5	진건읍 신월리 624-5 일원	14,021	
고등학교	기정	소계	3개소	45,102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725-1 일원	15,017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458 일원	15,082	
	기정	3	진건읍 신월리 150-4 일원	15,003	
특수학교	기정	소계	1개소	15,000	
	기정	1	진건읍 신월리 22-5 일원	15,000	

5) 방재시설계획

가)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3개소	678,476	
하천	기정	2	진접읍 산 1-13 일원~한강	481,331	왕숙천 지하도로, 도로,광장 중복결정 (32,966m ²)
	기정	402	진접읍 용정리 59-5 ~ 신월리312-14	21,880	용정천 도로 중복결정 (2,706m ²)
	기정	403	진접읍 신월리 666-1 ~ 평내동211-1	175,265	사릉천 지하도로, 수도시설, 도로 중복결정 (15,540m ²)

나) 우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5개소	150,186	
우수지	기정	1	진접읍 연평리 800-7 일원	10,029	근린공원1 중복결정 (10,029m ²)
	기정	2	진접읍 내곡리 571-16 일원	27,925	문화공원5 중복결정 (27,925m ²)
	기정	3	진접읍 신월리 331-10 일원	15,184	근린공원6 중복결정 (15,184m ²)
	기정	4	진접읍 신월리 653 일원	53,483	문화공원5 중복결정 (53,483m ²)
	기정	5	진접읍 진관리 925-8 일원	43,565	문화공원5 중복결정 (43,565m ²)

6) 환경기초시설계획

가)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기정	-	2개소	16,625	
쓰레기소각시설	기정	1	진접읍 진관리 916-2번지 일원	9,016	문화공원5 중복결정 (9,016m ²)
자원순환시설	기정	2	진접읍 진관리 914-21번지 일원	7,609	문화공원5 중복결정 (7,609m ²)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대규모 녹지와 하천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 도시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200m × 200m Green Network 조성 및 산지 및 하천 등 대상지 내·외 자연자원 결절부 대규모 거점공원을 계획하여 CO2 저감효과 증대
- GB1·2등급지는 원형지 공원으로 계획하여 양호한 산림자원 보존하며, 거점공원내 제로에너지 요소 도입으로 탄소에너지소비 저감

○ 미기후 활용 및 자연에너지 활용

- 동서 녹지축~왕숙천, 사릉천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물 주동배치로 열섬현상 저감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단지배치
- 태양열·지열에너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생태건축물 입지 고려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 소규모·분산형 자연친화기법을 활용하여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저감
- 공공시설내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으로 빗물의 분산 추진

2) 탄소저감계획

○ 제로(Zero)에너지 및 신(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제로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계획
- 첨단산업단지 및 남북간 주간선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신(新)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저탄소 에너지 친화도시 조성

○ 녹색건축 활성화 계획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2021.6.)」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25년부터 연면적 500㎡이상 신규건축물은 에너지절감 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 바람의 통로를 고려한 공원·녹지축 계획, 건축물 배치, 통풍축이 확보된 바람길을 통한 폭염 및 열섬현상 완화 유도

○ 친환경 교통단지

- 생활권을 연결하는 100m × 100m Walkable Grid 계획으로 공원녹지 및 가로체계가 통합된 보행기반 확보
- 남북간 공원 및 생활권 공원간 연계된 PM,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도시남북 중앙녹지축의 녹색교통공간 조성 등 친환경 교통단지 조성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계획

-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중 고효율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이용효율 향상설비의 적극 도입 권장

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3,995,262	1,106	-	-	-	-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181,480	15/6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주택지 공급단가		
				협의를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점점포용)	경쟁입찰	·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18,60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동주택	60㎡ 이하	754,226	6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60~85㎡ 이하	874,309	6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민간임대
		85㎡ 초과	252,772	61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근린생활시설	55,194	20/5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시설용지	주거유형복합	70,664	3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공복합	59,245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주상복합	224,784	1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상업시설	126,640	24/4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복합	85,579	5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시설	224,049	12/3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감정평가액)		
협의를양도자 (도시형공장 등) ^{주1)}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주2)}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공공시설용지	업무시설	134,484	12/4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산업시설 ^{주3)}	298,156	12/72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산업복합 ^{주3)}	75,600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산업시설 산업시설외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낙찰가격	
	산업지원시설 ^{주3)}	20,159	5/13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교육시설	335,609	3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문화시설	21,851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커뮤니티시설	11,137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보육시설	1,202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공업무시설	38,988	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집단에너지시설	27,178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전기공급설비	5,903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	
종교시설	15,829	10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59,760	35	국가, 지자체 ^{주4)}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1,861	1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 1)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 2)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며, 물류·유통업은 관할 지자체장 추천 필요
- 3) 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내 산업시설, 산업복합, 산업지원시설은 향후 도시첨단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라 면적 및 공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4)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조성원가의90%로 하여 공급
- 5)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확정 후 명시
- 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3,995,262	1,106	-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81,480	6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주택지 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18,60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동 주택	60㎡ 이하	833,934	6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60~85㎡ 이하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80%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민간임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85㎡ 초과	289,544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근린생활시설	55,194	5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거유형복합	70,664	3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공복합	59,245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주상복합	224,784	1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상업시설	126,640	4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복합	85,579	5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시설	224,049	3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은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 등) ^{주1)}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주2)}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업무시설	134,484	4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 ^{주3)}	298,156	72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산업복합 ^{주3)}	75,600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낙찰가격	산업시설 산업시설외
	산업지원시설 ^{주3)}	20,159	13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교육시설	335,609	3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
				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문화시설	21,851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커뮤니티시설	11,137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보육시설	1,202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공업무시설	38,988	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집단에너지시설	27,178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전기공급설비	5,903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
종교시설	15,829	10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59,760	35	국가, 지자체 ^{주4)}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1,861	1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 1)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산업집적기반시설 · 지식산업센터임
- 2)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며, 물류 · 유통업은 관할 지자체장 추천 필요
- 3) 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내 산업시설, 산업복합, 산업지원시설은 향후 도시첨단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라 면적 및 공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4)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조성원가의 90%로 하여 공급
- 5)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확정 후 명시
- 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

2)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차.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8,654	2	1,211	622	537	580	891	1,341	3,470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83,266	1,041	16,865	11,662	5,989	5,150	5,602	8,567	12,913	15,477	간접비 제외

2) 재원조달계획 : 공공주택사업자 자체자금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2)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에스코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

-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384),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95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전화 : 031-570-8862),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66-67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1]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남양주 왕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용정리, 송능리, 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9,376,908	-	9,376,90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구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181,480	-	181,480	-
R1-1 (주거전용)	소 계		62개소	17,823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2,169	-1	333	
			-2	331	
			-3	326	
			-4	313	
			-5	288	
			-6	288	
			-7	290	
	②	2,441	-1	304	
			-2	304	
			-3	306	
			-4	306	
			-5	308	
			-6	305	
			-7	304	
			-8	304	
	③	1,642	-1	265	
			-2	261	
			-3	288	
			-4	302	
			-5	261	
			-6	265	
	④	1,025	-1	249	
			-2	255	
			-3	250	
			-4	27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1 (주거전용)	⑤	899	-1	3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준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302		
			-3	292		
	⑥	1,699	-1	311		
			-2	273		
			-3	270		
			-4	268		
			-5	304		
			-6	273		
R1-1 (주거전용)	⑦	1,418	-1	284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준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79		
			-3	279		
			-4	301		
			-5	275		
	⑧	1,830	-1	305		
			-2	305		
			-3	305		
			-4	305		
			-5	305		
			-6	305		
	⑨	2,040	-1	262		
			-2	277		
			-3	286		
			-4	302		
			-5	302		
			-6	302		
			-7	309		
	⑩	2,660	-1	274		
			-2	272		
			-3	272		
			-4	272		
			-5	276		
			-6	260		
			-7	258		
			-8	258		
			-9	258		
-10			260			
R1-2 (주거전용)	소 계		44개소	12,03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준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2,093	-1	248		
			-2	263		
			-3	262		
			-4	262		
			-5	263		
			-6	267		
			-7	262		
			-8	266		
				-8		26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2 (주거전용)	②	3,303	-1	26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6	
			-3	266	
			-4	265	
			-5	265	
			-6	265	
			-7	265	
			-8	320	
			-9	285	
			-10	280	
			-11	280	
			-12	280	
	③	1,112	-1	280	
			-2	280	
			-3	280	
			-4	272	
	④	2,065	-1	264	
			-2	254	
			-3	255	
			-4	264	
			-5	261	
			-6	254	
			-7	254	
			-8	259	
	⑤	1,810	-1	305	
			-2	296	
			-3	324	
			-4	295	
			-5	296	
			-6	2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2 (주거전용)	⑥	1,653	-1	2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77	
			-3	279	
			-4	276	
			-5	266	
			-6	275	
R1-3 (주거전용)	소 계		35개소	9,749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1,264	-1	334		
		-2	310		
		-3	310		
		-4	310		
②	1,775	-1	303		
		-2	301		
		-3	304		
		-4	293		
		-5	297		
		-6	277		
③	1,063	-1	263		
		-2	267		
		-3	272		
		-4	261		
④	2,170	-1	286		
		-2	290		
		-3	287		
		-4	281		
		-5	272		
		-6	263		
		-7	256		
		-8	235		
⑤	1,936	-1	273		
		-2	279		
		-3	279		
		-4	279		
		-5	288		
		-6	273		
		-7	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3 (주거전용)	⑥	1,541	-1	249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52	
			-3	254	
			-4	251	
			-5	249	
			-6	286	
R1-4 (주거전용)	소 계		39개소	11,803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1,669	-1	276		
		-2	282		
		-3	283		
		-4	274		
		-5	284		
		-6	270		
②	895	-1	301		
		-2	297		
		-3	297		
③	824	-1	270		
		-2	270		
		-3	284		
④	2,272	-1	309		
		-2	308		
		-3	387		
		-4	317		
		-5	317		
		-6	317		
		-7	317		
⑤	1,914	-1	311		
		-2	312		
		-3	318		
		-4	318		
		-5	327		
		-6	32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4 (주거전용)	⑥	1,918	-1	311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312	
			-3	318	
			-4	318	
			-5	331	
			-6	328	
	⑦	2,311	-1	259	
			-2	262	
			-3	283	
			-4	281	
			-5	316	
			-6	310	
			-7	301	
			-8	299	
R1-5 (주거전용)	소 계		29개소	8,17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2,984	-1	285		
		-2	295		
		-3	298		
		-4	303		
		-5	307		
		-6	295		
		-7	313		
		-8	292		
		-9	305		
		-10	291		
②	1,628	-1	272		
		-2	272		
		-3	271		
		-4	271		
		-5	271		
		-6	27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5 (주거전용)	③	1,571	-1	26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2			
			-3	261			
			-4	260			
			-5	260			
			-6	262			
	④	1,993	-1	294			
			-2	272			
			-3	273			
			-4	275			
			-5	272			
			-6	330			
			-7	277			
			R1-6 소 계			29개소	8,133
(주거전용)	①	2,103	-1	236			
			-2	274			
			-3	269			
			-4	266			
			-5	277			
			-6	265			
			-7	258			
			-8	258			
			②	2,557	-1	303	
					-2	276	
-3	283						
-4	306						
-5	254						
-6	306						
-7	268						
-8	299						
			-9	26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6 (주거전용)	③	824	-1	28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9	
			-3	269	
	④	1,791	-1	269	
			-2	269	
			-3	269	
			-4	342	
			-5	318	
			-6	324	
	⑤	858	-1	286	
			-2	286	
			-3	286	
	R1-7 (주거전용)	소 계		43개소	
①		1,272	-1	324	
			-2	358	
			-3	298	
			-4	292	
②		962	-1	226	
			-2	246	
			-3	248	
			-4	242	
③		1,026	-1	260	
			-2	254	
			-3	254	
			-4	258	
④		1,026	-1	260	
			-2	254	
			-3	254	
			-4	258	
⑤		834	-1	280	
			-2	277	
			-3	277	
⑥		764	-1	255	
			-2	255	
			-3	25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7 (주거전용)	⑦	1,540	-1	2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0			
			-3	255			
			-4	255			
			-5	255			
			-6	255			
	⑧	1,540	-1	255			
			-2	255			
			-3	255			
			-4	255			
			-5	260			
			-6	260			
	⑨	941	-1	289			
			-2	291			
			-3	361			
	⑩	1,658	-1	247			
			-2	271			
			-3	297			
			-4	271			
			-5	283			
			-6	289			
	R1-8	소 계		29개소		7,9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주거전용)	①	1,136	-1		283	
				-2		290	
-3				281			
-4				282			
②	1,628	-1	262				
		-2	275				
		-3	281				
		-4	268				
		-5	265				
		-6	27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8 (주거전용)	③	1,872	-1	288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94			
			-3	296			
			-4	245			
			-5	251			
			-6	251			
			-7	247			
	④	2,021	-1	259			
			-2	256			
			-3	256			
			-4	240			
			-5	231			
			-6	254			
			-7	264			
			-8	261			
	⑤	1,248	-1	311			
			-2	313			
			-3	312			
			-4	312			
	R1-9 (주거전용)	소 계		24개소		6,558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1,638	-1		273	
-2				273			
-3				273			
-4				273			
-5				273			
-6				273			
②		1,182	-1	303			
			-2	294			
			-3	294			
			-4	29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9 (주거전용)	③	2,005	-1	247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47	
			-3	254	
			-4	254	
			-5	254	
			-6	254	
			-7	250	
			-8	245	
	④	1,733	-1	272	
			-2	345	
			-3	265	
			-4	284	
			-5	272	
			-6	295	
R1-10 (주거전용)	소 계		33개소	9,292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556	-1	278	
			-2	278	
	②	2,714	-1	270	
			-2	270	
			-3	270	
			-4	270	
			-5	277	
			-6	277	
			-7	270	
			-8	270	
			-9	270	
			-10	270	
	③	2,455	-1	308	
			-2	310	
			-3	317	
			-4	279	
			-5	306	
			-6	317	
			-7	310	
			-8	308	
	④	1,237	-1	309	
			-2	309	
			-3	309	
			-4	3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1-10 (주거전용)	⑤	1,315	-1	2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3	
			-3	263	
			-4	263	
			-5	263	
	⑥	1,015	-1	247	
			-2	251	
			-3	247	
			-4	270	
			소 계		
R2-1 (점포겸용)	①	5,490	-1	270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69	
			-3	269	
			-4	269	
			-5	269	
			-6	269	
			-7	268	
			-8	268	
			-9	268	
			-10	268	
			-11	268	
			-12	288	
			-13	288	
			-14	280	
			-15	280	
			-16	280	
			-17	280	
			-18	280	
			-19	280	
			-20	279	
	②	2,216	-1	278	
			-2	278	
			-3	278	
			-4	278	
			-5	278	
			-6	278	
			-7	274	
			-8	27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1 (점포겸용)	③	3,668	-1	306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306	
			-3	306	
			-4	305	
			-5	305	
			-6	305	
			-7	305	
			-8	305	
			-9	305	
			-10	305	
			-11	308	
			-12	307	
			R2-2 (점포겸용)	소 계	
①	1,700	-1		302	
		-2		280	
		-3		279	
		-4		280	
		-5		280	
		-6		279	
②	540	-1		287	
		-2		253	
③	1,070	-1		270	
		-2		265	
		-3		265	
		-4		270	
④	2,086	-1		300	
		-2		297	
		-3		297	
		-4		300	
		-5		302	
		-6		294	
		-7		296	
⑤	1,901	-1		270	
		-2		268	
		-3		273	
		-4		272	
		-5		269	
		-6		264	
		-7		28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2 (점포겸용)	⑥	1,355	-1	268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72			
			-3	272			
			-4	272			
			-5	271			
	⑦	1,129	-1	266			
			-2	266			
			-3	298			
			-4	299			
	⑧	2,251	-1	280			
			-2	282			
			-3	282			
			-4	282			
			-5	282			
			-6	282			
			-7	282			
			-8	279			
	R2-3 (점포겸용)	소 계		37개소		10,6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2,006	-1	279			
			-2	283			
-3			282				
-4			287				
-5			301				
-6			285				
-7			289				
②	1,750	-1	279				
		-2	292				
		-3	291				
		-4	284				
		-5	300				
		-6	30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3 (점포겸용)	③	3,467	-1	272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80		
			-3	291		
			-4	291		
			-5	291		
			-6	291		
			-7	291		
			-8	291		
			-9	291		
			-10	291		
			-11	298		
			-12	289		
	④	1,289	-1	332		
			-2	309		
			-3	329		
			-4	319		
	⑤	2,159	-1	273		
			-2	265		
			-3	265		
			-4	265		
			-5	265		
			-6	264		
			-7	264		
			-8	298		
	R2-4 (점포겸용)	소 계		134개소	37,315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①	1,775	-1	277		
			-2	274		
			-3	273		
			-4	271		
			-5	347		
			-6	33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4 (점포겸용)	②	2,599	-1	284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84	
			-3	279	
			-4	277	
			-5	282	
			-6	290	
			-7	300	
			-8	338	
			-9	265	
	③	2,082	-1	280	
			-2	248	
			-3	248	
			-4	235	
			-5	280	
			-6	266	
			-7	266	
			-8	259	
	④	1,024	-1	279	
			-2	251	
			-3	254	
			-4	240	
	⑤	776	-1	281	
			-2	251	
			-3	244	
	⑥	271	-1	271	
	⑦	4,345	-1	291	
			-2	293	
			-3	293	
			-4	295	
			-5	289	
			-6	291	
			-7	292	
			-8	292	
-9			292		
-10			292		
-11			285		
-12			285		
-13			285		
-14			285		
-15			28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4 (점포겸용)	⑧	3,860	-1	274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79		
			-3	260		
			-4	295		
			-5	269		
			-6	280		
			-7	274		
			-8	284		
			-9	285		
			-10	274		
			-11	267		
			-12	277		
			-13	272		
			-14	270		
		⑨	2,949	-1	282	
	-2			297		
	-3			308		
	-4			293		
	-5			293		
	-6			277		
	-7			284		
	-8			298		
	-9			295		
	-10			322		
		⑩	1,650	-1	271	
	-2			268		
	-3			267		
	-4			280		
	-5			285		
	-6			279		
		⑪	1,137	-1	265	
	-2			315		
	-3			285		
	-4			27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4 (점포겸용)	㉓	3,310	-1	274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77	
			-3	282	
			-4	280	
			-5	280	
			-6	274	
			-7	274	
			-8	280	
			-9	280	
			-10	274	
			-11	261	
			-12	274	
	㉔	2,150	-1	267	
			-2	280	
			-3	266	
			-4	272	
			-5	259	
			-6	269	
			-7	276	
			-8	261	
	㉕	4,011	-1	268	
			-2	273	
			-3	260	
			-4	247	
			-5	272	
			-6	305	
			-7	291	
			-8	267	
			-9	261	
			-10	263	
			-11	262	
			-12	265	
			-13	259	
			-14	254	
			-15	264	
	㉖	1,953	-1	272	
			-2	284	
			-3	289	
			-4	287	
			-5	280	
			-6	268	
			-7	2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R2-4 (점포겸용)	⑩	3,423	-1	273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결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285	
			-3	285	
			-4	285	
			-5	285	
			-6	285	
			-7	285	
			-8	285	
			-9	285	
			-10	285	
			-11	285	
			-12	300	
			R2-5 (점포겸용)	소 계	
①	1,873	-1		265	
		-2		265	
		-3		265	
		-4		271	
		-5		271	
		-6		270	
		-7		266	
②	1,059	-1		262	
		-2		265	
		-3		266	
		-4		266	
③	803	-1		269	
		-2		268	
		-3		266	
④	1,725	-1		286	
		-2		286	
		-3		291	
		-4		290	
		-5		285	
		-6		287	
⑤	1,590	-1		266	
		-2		266	
		-3		265	
		-4		263	
		-5		265	
		-6		265	

2) 연립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8,603	1개소	18,603	-
D-1	-	18,603	-	18,60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3) 공동주택(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1,881,307	61개소	1,881,307	-
소 계		703,818	25개소	703,81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A-1	-	28,148	-	28,148	
A-2	-	22,558	-	22,558	
A-3	-	14,784	-	14,784	
A-4	-	36,886	-	36,886	
A-5	-	38,005	-	38,005	
A-6	-	42,051	-	42,051	
A-7	-	18,798	-	18,798	
A-8	-	34,656	-	34,656	
A-9	-	27,593	-	27,593	
A-10	-	22,212	-	22,212	
A-11	-	18,137	-	18,137	
A-12	-	24,977	-	24,977	
A-13	-	37,416	-	37,416	
A-14	-	32,649	-	32,649	
A-15	-	24,383	-	24,383	
A-16	-	31,948	-	31,948	
A-17	-	35,884	-	35,884	
A-18	-	20,043	-	20,043	
A-19	-	41,459	-	41,459	
A-20	-	40,896	-	40,896	
A-21	-	19,084	-	19,084	
A-22	-	23,318	-	23,318	
A-23	-	21,054	-	21,054	
A-24	-	26,755	-	26,755	
A-25	-	20,124	-	20,12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소 계		559,846	19개소	559,846	- 획지의 분할 및 합병불허
B-1	-	31,431	-	31,431	
B-2	-	34,012	-	34,012	
B-3	-	15,318	-	15,318	
B-4	-	13,437	-	13,437	
B-5	-	24,783	-	24,783	
B-6	-	34,428	-	34,428	
B-7	-	28,815	-	28,815	
B-8	-	42,914	-	42,914	
B-9	-	36,296	-	36,296	
B-10	-	37,666	-	37,666	
B-11	-	21,872	-	21,872	
B-12	-	38,807	-	38,807	
B-13	-	26,266	-	26,266	
B-14	-	42,835	-	42,835	
B-15	-	27,052	-	27,052	
B-16	-	20,574	-	20,574	
B-17	-	29,201	-	29,201	
B-18	-	25,369	-	25,369	
B-19	-	28,770	-	28,770	
소 계		116,743	4개소	116,74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불허
C-1	-	47,228	-	47,228	
C-2	-	24,505	-	24,505	
C-3	-	27,130	-	27,130	
C-4	-	17,880	-	17,880	
소 계		500,900	13개소	500,90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불허
S-1	-	31,255	-	31,255	
S-2	-	37,916	-	37,916	
S-3	-	32,830	-	32,830	
S-4	-	35,134	-	35,134	
S-5	-	75,763	-	75,763	
S-6	-	49,682	-	49,682	
S-7	-	39,317	-	39,317	
S-8	-	33,816	-	33,816	
S-9	-	57,789	-	57,789	
S-10	-	26,602	-	26,602	
S-11	-	29,071	-	29,071	
S-12	-	22,061	-	22,061	
S-13	-	29,664	-	29,664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1,881,307	61개소	1,881,307	-
소 계		622,894	25개소	622,8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A-1	-	28,148	-	28,148	
A-2	-	22,558	-	22,558	
A-3	-	14,784	-	14,784	
A-4	-	13,437	-	13,437	
A-5	-	15,318	-	15,318	
A-6	-	42,051	-	42,051	
A-7	-	18,798	-	18,798	
A-8	-	28,815	-	28,815	
A-9	-	27,593	-	27,593	
A-10	-	22,212	-	22,212	
A-11	-	18,137	-	18,137	
A-12	-	24,977	-	24,977	
A-13	-	37,416	-	37,416	
A-14	-	26,602	-	26,602	
A-15	-	24,383	-	24,383	
A-16	-	27,052	-	27,052	
A-17	-	17,880	-	17,880	
A-18	-	20,043	-	20,043	
A-19	-	41,459	-	41,459	
A-20	-	40,896	-	40,896	
A-21	-	19,084	-	19,084	
A-22	-	23,318	-	23,318	
A-23	-	21,054	-	21,054	
A-24	-	26,755	-	26,755	
A-25	-	20,124	-	20,12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소 계		327,928	11개소	327,92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B-1	-	31,431	-	31,431	
B-2	-	34,012	-	34,012	
B-3	-	26,266	-	26,266	
B-4	-	21,872	-	21,872	
B-5	-	24,783	-	24,783	
B-6	-	38,807	-	38,807	
B-7	-	39,317	-	39,317	
B-8	-	20,574	-	20,574	
B-9	-	36,296	-	36,296	
B-10	-	25,369	-	25,369	
B-17	-	29,201	-	29,201	
소 계		136,529	4개소	136,52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C-1	-	47,228	-	47,228	
C-2	-	24,505	-	24,505	
C-3	-	27,130	-	27,130	
C-4	-	37,666	-	37,666	
소 계		793,956	21개소	793,956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S-1	-	31,255	-	31,255	
S-2	-	37,916	-	37,916	
S-3	-	32,830	-	32,830	
S-4	-	35,134	-	35,134	
S-5	-	75,763	-	75,763	
S-6	-	49,682	-	49,682	
S-7	-	38,005	-	38,005	
S-8	-	33,816	-	33,816	
S-9	-	57,789	-	57,789	
S-10	-	32,649	-	32,649	
S-11	-	29,071	-	29,071	
S-12	-	22,061	-	22,061	
S-13	-	29,664	-	29,664	
S-14	-	42,835	-	42,835	
S-15	-	34,656	-	34,656	
S-16	-	31,948	-	31,948	
S-17	-	35,884	-	35,884	
S-18	-	36,886	-	36,886	
S-19	-	34,428	-	34,428	
S-20	-	42,914	-	42,914	
S-21	-	28,770	-	28,770	

4) 주상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224,784	10개소	224,784	-
M-1	-	25,295	-	25,29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M-2	-	19,305	-	19,305	
M-3	-	19,219	-	19,219	
M-4	-	21,327	-	21,327	
M-5	-	16,957	-	16,957	
M-6	-	24,511	-	24,511	
M-7	-	24,715	-	24,715	
M-8	-	17,887	-	17,887	
M-9	-	40,701	-	40,701	
M-10	-	14,867	-	14,867	

5) 주거유형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70,664	3개소	70,664	-
LM-1	-	14,217	-	14,21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LM-2	-	28,094	-	28,094	
LM-3	-	28,353	-	28,353	

6) 자족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85,579	5개소	85,579	-
IM-1	-	16,278	-	16,27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IM-2	-	23,033	-	23,033	
IM-3	-	16,533	-	16,533	
IM-4	-	20,119	-	20,119	
IM-5	-	9,616	-	9,616	

7) 공공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59,245	4개소	59,245	-
PM-1	-	14,194	-	14,1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PM-2	-	16,707	-	16,707	
PM-3	-	19,006	-	19,006	
PM-4	-	9,338	-	9,338	

8) 유보지(복합형)(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55,483	3개소	55,483	-
RM-1	-	22,443	-	22,44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RM-2	-	9,381	-	9,381	
RM-3	-	23,659	-	23,659	

9)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55,194	58개소	55,194	-
근생1	소 계		2개소	1,6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1,612	-1	811	
	-		-2	801	
근생2	소 계		4개소	3,208	
	-	3,208	-1	800	
	-		-2	800	
	-		-3	807	
근생3	소 계		3개소	3,916	
	-	3,916	-1	1,024	
	-		-2	1,022	
	-		-3	950	
근생4	소 계		3개소	2,478	
	-	2,478	-1	803	
	-		-2	824	
	-		-3	851	
근생5	소 계		3개소	2,868	
	-	2,868	-1	955	
	-		-2	958	
	-		-3	95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근생6	-	965	-1	9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근생7	소 계		2개소	1,973	
	-	1,973	-1	990	
근생7			-2	983	
	소 계		4개소	4,312	
	-	4,312	-1	992	
근생8			-2	857	
			-3	1,476	
			-4	987	
근생9	소 계		4개소	3,596	
	-	3,596	-1	941	
			-2	926	
			-3	878	
근생9			-4	851	
	소 계		4개소	3,709	
	-	3,709	-1	937	
			-2	919	
근생10			-3	918	
			-4	935	
	소 계		2개소	2,068	
근생11	-	2,068	-1	1,043	
			-2	1,025	
근생12	-	974	-1	974	
근생13	-	473	-1	473	
근생14	소 계		2개소	1,561	
	-	1,561	-1	771	
			-2	790	
근생15	소 계		5개소	4,832	
	-	4,832	-1	859	
			-2	887	
			-3	1027	
			-4	1027	
			-5	1032	
근생16	소 계		3개소	2,948	
	-	2,948	-1	1,052	
			-2	971	
			-3	9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근생17	소 계		4개소	3,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3,669	-1	902	
			-2	922	
			-3	922	
			-4	923	
근생18	소 계		3개소	2,771	
	-	2,771	-1	864	
			-2	927	
		-3	980		
근생19	소 계		2개소	2,883	
	-	2,883	-1	1,445	
		-2	1,438		
근생20	소 계		4개소	4,378	
	-	4,378	-1	1,067	
			-2	1,050	
			-3	1,140	
		-4	1,121		

10) 상업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26,640	48개소	126,640	-
상업1	소 계		2개소	3,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3,386	-1	1,687	
		-2	1,699		
상업2	소 계		2개소	2,499	
	-	2,499	-1	1,254	
		-2	1,245		
상업3	소 계		2개소	5,228	
	-	5,228	-1	2,611	
		-2	2,617		
상업4	-	1,754	-1	1,754	
상업5	소 계		3개소	3,150	
	-	3,150	-1	1,054	
			-2	1,053	
		-3	1,043		
상업6	소 계		2개소	1,882	
	-	1,882	-1	891	
		-2	99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상업7	-	1,975	-1	1,975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상업8	소 계		2개소	2,934	
	-	2,934	-1	1,472	
상업9	소 계		2개소	5,684	
	-	5,684	-1	2,772	
상업10	소 계		3개소	5,832	
	-	5,832	-1	2,600	
상업11	소 계		2개소	4,217	
	-	4,217	-1	2,099	
상업12	소 계		2개소	4,473	
	-	4,473	-1	2,253	
상업13	소 계		2개소	3,586	
	-	3,586	-1	1,776	
상업14	소 계		2개소	3,582	
	-	3,582	-1	1,800	
상업15	소 계		2개소	2,782	
	-	2,782	-1	1,382	
상업16	소 계		2개소	2,782	
	-	2,782	-1	1,437	
상업17-1	-	10,821	-1	10,821	
상업17-2	-	9,657	-1	9,657	
상업17-3	-	8,373	-1	8,373	
상업17-4	-	10,983	-1	10,983	
상업18	소 계		2개소	13,025	
	-	13,025	-1	6,437	
상업19	소 계		2개소	9,088	
	-	9,088	-1	4,555	
상업20	소 계		4개소	4,470	
	-	4,470	-1	1,047	
			-2	1,003	
			-3	1,210	
상업21	소 계		4개소	4,477	
	-	4,477	-1	1,066	
			-2	1,112	
			-3	1,144	
		-4	1,155		

11) 업무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34,484	41개소	134,484	-
업무1	소 계		2개소	8,604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8,604	-1	4,266	
			-2	4,338	
업무2	소 계		3개소	14,455	
	-	14,455	-1	4,812	
			-2	4,821	
			-3	4,822	
업무3	소 계		2개소	6,681	
	-	6,681	-1	3,472	
			-2	3,209	
업무4	소 계		2개소	12,581	
	-	12,581	-1	6,265	
			-2	6,316	
업무5	소 계		2개소	12,038	
	-	12,038	-1	6,028	
			-2	6,010	
업무6	소 계		6개소	30,373	
	-	30,373	-1	5,981	
			-2	5,327	
			-3	5,341	
			-4	5,308	
			-5	4,388	
			-6	4,028	
업무7	소 계		6개소	12,046	
	-	12,046	-1	2,307	
			-2	1,767	
			-3	2,043	
			-4	2,056	
			-5	2,006	
			-6	1,867	
업무8	소 계		3개소	2,880	
	-	2,880	-1	890	
			-2	990	
			-3	1,000	
업무9	소 계		5개소	10,820	
	-	10,820	-1	3,506	
			-2	1,979	
			-3	1,632	
			-4	1,606	
			-5	2,09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업무10	소 계		3개소	8,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8,003	-1	3,067	
			-2	2,495	
			-3	2,441	
업무11	소 계		5개소	8,817	
	-	8,817	-1	2,279	
			-2	2,195	
			-3	1,991	
			-4	1,176	
-	8,817	-5	1,176		
		소 계		2개소	
-	7,186	-1	3,600		
		-2	3,586		

12) 자족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224,049	32개소	224,049	-
자족1	소 계		8개소	38,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38,338	-1	3,551	
			-2	4,344	
			-3	6,679	
			-4	5,812	
			-5	4,456	
			-6	4,491	
			-7	4,497	
-	38,338	-8	4,508		
자족2	소 계		2개소	15,582	
	-	15,582	-1	6,558	
-2			9,024		
자족3	소 계		6개소	13,284	
	-	13,284	-1	2,741	
			-2	2,792	
			-3	1,968	
			-4	1,980	
			-5	1,615	
-6	2,18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자족4	-	17,575	-1	17,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자족5	-	12,729	-1	12,729	
자족6	소 계		3개소	28,955	
	-	28,955	-1	10,153	
			-2	9,230	
		-3	9,572		
자족7	소 계		4개소	12,199	
	-	12,199	-1	3,070	
			-2	3,086	
			-3	3,021	
-4			3,022		
자족8	소 계		3개소	9,678	
	-	9,678	-1	3,013	
			-2	3,214	
-3			3,451		
자족9	-	19,241	-1	19,241	
자족10	-	30,952	-1	30,952	
자족11	-	3,653	-1	3,653	
자족12	-	21,863	-1	21,863	

13) 산업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298,156	72개소	298,156	-
산업1	소 계		4개소	20,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20,818	-1	5,415	
			-2	4,699	
			-3	5,277	
-4			5,427		
산업2	소 계		3개소	11,405	
	-	11,405	-1	3,796	
			-2	3,855	
-3			3,754		
산업3	소 계		5개소	23,646	
	-	23,646	-1	5,088	
			-2	4,105	
			-3	3,532	
			-4	3,989	
-5			6,93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산업4	소 계		11개소	44,6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44,659	-1	7,016	
			-2	6,804	
			-3	3,904	
			-4	2,161	
			-5	2,078	
			-6	4,040	
			-7	1,675	
			-8	2,022	
			-9	3,800	
			-10	3,748	
			-11	7,411	
산업5	소 계		9개소	18,198	
	-	18,198	-1	2,309	
			-2	2,219	
			-3	1,468	
			-4	1,458	
			-5	1,730	
			-6	1,680	
			-7	3,960	
			-8	1,745	
			-9	1,629	
산업6	소 계		9개소	30,350	
	-	30,350	-1	1,514	
			-2	1,837	
			-3	2,418	
			-4	3,299	
			-5	3,816	
			-6	5,596	
			-7	5,713	
			-8	3,769	
			-9	2,388	
산업7	소 계		14개소	30,788	
	-	30,788	-1	1,763	
			-2	1,752	
			-3	1,728	
			-4	1,704	
			-5	1,725	
			-6	1,752	
			-7	1,767	
			-8	1,631	
			-9	1,638	
			-10	1,633	
			-11	4,596	
			-12	3,159	
			-13	3,058	
			-14	2,88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산업8	소 계		4개소	51,111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51,111	-1	12,673	
			-2	12,673	
			-3	16,574	
			-4	9,191	
산업9	소 계		5개소	18,180	
	-	18,180	-1	3,421	
			-2	5,511	
			-3	3,467	
			-4	2,915	
산업10	소 계		3개소	7,249	
	-	7,249	-1	2,217	
			-2	2,584	
			-3	2,448	
산업11	소 계		3개소	7,292	
	-	7,292	-1	1,788	
			-2	3,270	
산업12	소 계		2개소	34,460	
	-	34,460	-1	14,253	
			-2	20,207	

14) 산업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20,159	13개소	20,159	-
지원1	소 계		2개소	3,2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3,287	-1	1,675	
		-2	1,612		
지원2	소 계		2개소	2,683	
	-	2,683	-1	1,338	
		-2	1,345		
지원3	소 계		2개소	3,467	
	-	3,467	-1	1,740	
		-2	1,727		
지원4	소 계		4개소	5,395	
	-	5,395	-1	1,266	
			-2	1,308	
			-3	1,470	
지원5	소 계		3개소	5,327	
	-	5,327	-1	2,154	
			-2	1,631	
			-3	1,542	

15) 산업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75,600	4개소	75,600	-
복합1	-	14,899	-	14,89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복합2	-	25,601	-	25,601	
복합3	-	30,891	-	30,891	
복합4	-	4,209	-	4,209	

1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변경없음)

가) 교육시설

① 유치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36,133	9개소	36,133	-
유1	-	4,002	-	4,00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유2	-	4,013	-	4,013	
유3	-	4,001	-	4,001	
유4	-	4,038	-	4,038	
유5	-	4,037	-	4,037	
유6	-	4,001	-	4,001	
유7	-	4,001	-	4,001	
유8	-	4,008	-	4,008	
유9	-	4,032	-	4,032	

② 초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54,723	11개소	154,723	-
초1	-	15,001	-	15,001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초2	-	12,690	-	12,690	
초3	-	14,572	-	14,572	
초4	-	15,000	-	15,000	
초5	-	13,365	-	13,365	
초6	-	15,000	-	15,000	
초7	-	14,500	-	14,500	
초8	-	13,002	-	13,002	
초9	-	13,001	-	13,001	
초10	-	13,760	-	13,760	
초11	-	14,832	-	14,832	

③ 중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84,651	6개소	84,651	-
중1	-	14,200	-	14,20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중2	-	14,501	-	14,501	
중3	-	14,000	-	14,000	
중4	-	14,000	-	14,000	
중5	-	14,021	-	14,021	
중6	-	13,929	-	13,929	

④ 고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45,102	3개소	45,102	-
고1	-	15,017	-	15,01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고2	-	15,082	-	15,082	
고3	-	15,003	-	15,003	

⑤ 특수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5,000	1개소	15,000	-
특1	-	15,000	-	15,00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나) 보육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202	2개소	1,202	-
보육1	-	594	-	5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보육2	-	608	-	608	

다) 문화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21,851	4개소	21,851	-
문화1	-	3,767	-	3,76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문화2	-	7,805	-	7,805	
문화3	-	5,101	-	5,101	
문화4	-	5,178	-	5,178	

라) 커뮤니티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1,137	7개소	11,137	-
커뮤니티1	-	2,053	-	2,05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커뮤니티2	-	2,225	-	2,225	
커뮤니티3	-	1,417	-	1,417	
커뮤니티4	-	1,350	-	1,350	
커뮤니티5	-	1,618	-	1,618	
커뮤니티6	-	1,038	-	1,038	
커뮤니티7	-	1,436	-	1,436	

마) 공공업무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38,988	6개소	38,988	-
공공1	-	2,205	-	2,20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공공2	-	3,153	-	3,153	
공공3	-	4,038	-	4,038	
공공4	-	22,516	-	22,516	
공공5	-	5,832	-	5,832	
공공6	-	1,244	-	1,244	

바) 종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5,829	10개소	15,829	-
종1	-	1,305	-	1,30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종2	-	878	-	878	
종3	-	2,453	-	2,453	
종4	-	1,328	-	1,328	
종5	-	821	-	821	
종6	-	1,333	-	1,333	
종7	-	1,534	-	1,534	
종8	-	3,212	-	3,212	
종9	-	1,421	-	1,421	
종10	-	1,544	-	1,544	

사)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59,760	35개소	59,760	-
주1	-	1,623	-	1,62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주2	-	1,242	-	1,242	
주3	-	1,798	-	1,798	
주4	-	810	-	810	
주5	-	1,654	-	1,654	
주6	-	885	-	885	
주7	-	1,216	-	1,216	
주8	-	967	-	967	
주9	-	1,316	-	1,316	
주10	-	943	-	943	
주11	-	1,692	-	1,692	
주12	-	1,035	-	1,035	
주13	-	949	-	949	
주14	-	1,318	-	1,318	
주15	-	1,318	-	1,318	
주16	-	1,404	-	1,404	
주17	-	1,363	-	1,363	
주18	-	1,602	-	1,602	
주19	-	1,052	-	1,052	
주20	-	901	-	901	
주21	-	1,149	-	1,149	
주22	-	1,036	-	1,036	
주23	-	1,404	-	1,404	
주24	-	1,525	-	1,525	
주25	-	1,431	-	1,431	
주26	-	1,374	-	1,374	
주27	-	1,617	-	1,617	
주28	-	1,399	-	1,399	
주29	-	4,157	-	4,157	
주30	-	4,905	-	4,905	
주31	-	3,624	-	3,624	
주32	-	3,155	-	3,155	
주33	-	2,689	-	2,689	
주34	-	3,478	-	3,478	
주35	-	1,729	-	1,729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21,861	11개소	21,861	-
주유1	-	2,449	-	2,44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주유2	-	2,678	-	2,678	
주유3	-	2,665	-	2,665	
주유4	-	1,439	-	1,439	
주유5	-	1,553	-	1,553	
주유6	-	2,086	-	2,086	
주유7	-	1,373	-	1,373	
주유8	-	1,437	-	1,437	
주유9	-	865	-	865	
주유10	-	3,981	-	3,981	
주유11	-	1,335	-	1,335	

자) 집단에너지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27,178	1개소	27,178	-
열1	-	27,178	-	27,17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차)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7,526	4개소	7,526	-
전기1	-	841	-	841	- 케이블헤드부지
전기2	-	782	-	78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전기3	-	2,926	-	2,926	- 변전소부지
전기4	-	2,977	-	2,97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R1 ~ R2	블록구분	R1(주거전용)	R2(점포겸용)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 제외), 카목 내지 하목, 너목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허용 가구수	· 3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해당블록	· R1-1~R1-10	· R2-1~R2-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조, 제3장 제254조, 제4장 제38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1조부터 제14조, 제3장 제255조부터 제258조, 제4장 제385조부터 제388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5조, 제3장 제259조, 제4장 제38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조, 제3장 제260조, 제4장 제39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7조, 제3장 제261조, 제4장 제3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조, 제3장 제262조, 제4장 제39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2) 연립주택(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기능은 세대당 0.7㎡이하로 함 (단 인근 지역 상업기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경우 세대당 1.0㎡이하로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 내 허용하는 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총포판매소,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불허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72조부터 제28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83조, 제288조부터 제29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9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9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96조부터 제29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298조부터 제299조에 따른다.			

■ <별표1> 연립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D-1	합 계	18,603	124	310	105	60	100	4	민간분양	-
	60㎡~85㎡이하	18,603	124	310	105	60	100	4	민간분양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층수산정시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별표1> 연립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변경)

구 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D-1	합 계	18,603	118	295	110	60	100	4	민간분양	-
	60㎡~85㎡이하	18,603	118	295	110	60	100	4	민간분양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층수산정시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3) 공동주택(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B, C, S	A1 ~ A25, B1 ~ B19, C1 ~ C4, S1 ~ S1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기능은 세대당 0.7㎡이하로 함 (단 인근 지역 상업기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경우 세대당 1.0㎡이하로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 내 허용하는 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총포판매소,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불허함
			불허 용도
		건폐율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8조부터 제36조, 제3장 제272조부터 제282조, 제4장 제402조부터 제40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37조부터 제47조, 제3장 제283조부터 제293조, 제4장 제405조부터 제411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48조, 제3장 제294조, 제4장 제412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49조, 제3장 제295조, 제4장 제41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50조부터 제51조, 제3장 제296조부터 제297조, 제4장 제414조부터 제41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52조부터 제53조, 제3장 제298조부터 제299조, 제4장 제416조부터 제417조에 따른다.		

■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기정)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합계	1,881,307	44,042	103,152	-	-	-	-	-	-	
A-1	60㎡이하	28,148	638	1,595	85	50	195	25	공공분양	-
	소계	22,558	620	1,551	-	-	-	-	-	-
A-2	60㎡이하	14,888	409	1,023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7,670	211	528	80	50	22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
A-3	60㎡이하	14,784	585	936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소계	36,886	1,398	3,496	-	-	-	-	-	-
A-4	60㎡이하	18,443	799	1,998	45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포함)	-
		18,443	599	1,498	60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
	소계	38,005	1,441	3,603	-	-	-	-	-	-
A-5	60㎡이하	19,003	823	2,058	45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
		19,002	618	1,545	60	50	195	25		
	소계	42,051	1,156	2,891	-	-	-	-	-	-
A-6	60㎡이하	27,754	763	1,908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14,297	393	983	80	50	22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
	소계	18,798	670	1,340	-	-	-	-	-	-
A-7	60㎡이하	9,399	298	745	60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9,399	372	595	48	50	190	25		
	소계	34,656	1,235	2,471	-	-	-	-	-	-
A-8	60㎡이하	17,328	549	1,373	60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17,328	686	1,098	48	50	190	25		
	소계	27,593	741	1,853	-	-	-	-	-	-
A-9	60㎡이하	18,211	489	1,223	80	50	215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9,382	252	630	80	50	215	25	신혼희망(행복주택)	-
A-10	60㎡이하	22,212	995	1,592	48	50	215	25	통합공공임대	-
	소계	18,137	671	1,678	-	-	-	-	-	-
A-11	60㎡이하	9,069	384	960	45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9,068	287	718	60	50	190	25		
A-12	60㎡이하	24,977	989	1,582	48	50	190	23	통합공공임대	-
	소계	37,416	1,029	2,573	-	-	-	-	-	-
A-13	60㎡이하	24,695	679	1,698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12,721	350	875	80	50	22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소계	32,649	898	2,246	-	-	-	-	-
A-14	60㎡이하	21,548	593	1,483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11,101	305	763	80	50	22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24,383	869	1,738	-	-	-	-	-
A-15	60㎡이하	12,192	386	965	60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12,191	483	773	48	50	190	25	
	소계	31,948	1,180	2,950	-	-	-	-	-
A-16	60㎡이하	15,974	674	1,685	45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15,974	506	1,265	60	50	190	25	
	소계	35,884	1,070	2,137	-	-	-	-	-
A-17	60㎡이하	17,942	472	1,180	60	50	160	25	통합공공임대
		17,942	598	957	48	50	160	25	
A-18	60㎡이하	20,043	793	1,269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41,459	1,049	2,623	-	-	-	-	-
A-19	60㎡이하	27,363	692	1,730	83	50	210	30	신혼희망(공공분양)
		14,096	357	893	83	50	210	30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40,896	961	2,403	-	-	-	-	-
A-20	60㎡이하	26,991	634	1,585	83	50	195	25	신혼희망(공공분양)
		13,905	327	818	83	50	195	25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19,084	506	1,265	-	-	-	-	-
A-21	60㎡이하	12,595	334	835	83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6,489	172	430	83	50	22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A-22	60㎡이하	23,318	947	1,515	48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21,054	829	1,658	-	-	-	-	-
A-23	60㎡이하	10,527	368	920	60	50	210	30	통합공공임대
		10,527	461	738	48	50	210	30	
	소계	26,755	602	1,506	-	-	-	-	-
A-24	60㎡이하	17,658	397	993	83	50	19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9,097	205	513	83	50	190	25	신혼희망(행복주택)
A-25	60㎡이하	20,124	839	1,342	48	50	200	30	통합공공임대
B-1	60~85㎡이하	31,431	569	1,423	110	50	200	25	공공분양
B-2	60~85㎡이하	34,012	587	1,468	110	50	190	25	공공분양
B-3	60~85㎡이하	15,318	292	730	105	50	200	25	민간분양
B-4	60~85㎡이하	13,437	230	575	105	50	180	25	민간분양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B-5	60~85㎡이하	24,783	448	1,120	105	50	190	25	민간분양	-
B-6	60~85㎡이하	34,428	689	1,723	105	50	210	25	민간분양	-
B-7	60~85㎡이하	28,815	576	1,440	105	50	210	25	민간분양	-
B-8	60~85㎡이하	42,914	899	2,248	105	50	220	25	민간분양	-
B-9	60~85㎡이하	36,296	648	1,620	112	50	200	30	민간분양	-
B-10	60~85㎡이하	37,666	646	1,615	105	50	180	25	민간분양	-
B-11	60~85㎡이하	21,872	388	970	110	50	195	25	공공분양	-
B-12	60~85㎡이하	38,807	693	1,733	112	50	200	25	민간분양	-
B-13	60~85㎡이하	26,266	516	1,290	112	50	220	25	민간분양	-
B-14	60~85㎡이하	42,835	897	2,243	105	50	220	25	민간분양	-
B-15	60~85㎡이하	27,052	567	1,418	105	50	220	25	민간분양	-
B-16	60~85㎡이하	20,574	431	1,078	105	50	220	30	민간분양	-
B-17	60~85㎡이하	29,201	507	1,268	110	50	195	25	공공분양	-
B-18	60~85㎡이하	25,369	532	1,330	105	50	220	30	민간분양	-
B-19	60~85㎡이하	28,770	603	1,508	105	50	220	30	민간분양	-
C-1	85㎡초과	47,228	607	1,518	140	50	180	25	민간분양	-
C-2	85㎡초과	24,505	350	875	140	50	200	25	민간분양	-
C-3	85㎡초과	27,130	388	970	140	50	200	28	민간분양	-
C-4	85㎡초과	17,880	230	575	140	50	180	25	민간분양	-
소계		31,255	599	1,498	-	-	-	-	-	-
S-1	60~85㎡이하	20,628	432	1,080	105	50	220	25	민간분양	-
	85㎡초과	10,627	167	418	140	50	220	25	민간분양	
소계		37,916	645	1,613	-	-	-	-	-	-
S-2	60~85㎡이하	25,025	465	1,163	105	50	195	25	민간분양	-
	85㎡초과	12,891	180	450	140	50	195	25	민간분양	
소계		32,830	629	1,573	-	-	-	-	-	-
S-3	60~85㎡이하	21,668	454	1,135	105	50	220	25	민간분양	-
	85㎡초과	11,162	175	438	140	50	220	25	민간분양	
소계		35,134	643	1,608	-	-	-	-	-	-
S-4	60~85㎡이하	23,188	464	1,160	105	50	210	25	민간분양	-
	85㎡초과	11,946	179	448	140	50	210	25		
소계		75,763	1,386	3,465	-	-	-	-	-	-
S-5	60~85㎡이하	50,004	1,000	2,500	105	50	210	25	민간분양	-
	85㎡초과	25,759	386	965	140	50	210	25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S-6	소계	49,682	881	2,203	-	-	-	-	-
	60㎡이하	24,841	497	1,243	85	50	170	공공분양	-
	60~85㎡이하	24,841	384	960	110	50	170		
S-7	소계	39,317	685	1,713	-	-	-	-	-
	60~85㎡이하	25,949	494	1,235	105	50	200	민간분양	-
	85㎡초과	13,368	191	478	140	50	200		
S-8	소계	33,816	649	1,623	-	-	-	-	-
	60~85㎡이하	22,319	468	1,170	105	50	220	민간분양	-
	85㎡초과	11,497	181	453	140	50	220		
S-9	소계	57,789	1,108	2,771	-	-	-	-	-
	60~85㎡이하	38,141	799	1,998	105	50	220	민간분양	-
	85㎡초과	19,648	309	773	140	50	220		
S-10	소계	26,602	463	1,158	-	-	-	-	-
	60~85㎡이하	17,557	334	835	105	50	200	민간분양	-
	85㎡초과	9,045	129	323	140	50	200		
S-11	소계	29,071	546	1,365	-	-	-	-	-
	60㎡이하	14,536	308	770	85	50	180	공공분양	-
	60~85㎡이하	14,535	238	595	110	50	180		
S-12	소계	22,061	391	978	-	-	-	-	-
	60㎡이하	11,031	221	553	85	50	170	공공분양	-
	60~85㎡이하	11,030	170	425	110	50	170		
S-13	소계	29,664	413	1,033	-	-	-	-	-
	60~85㎡이하	19,578	298	745	105	50	160	민간분양	-
	85㎡초과	10,086	115	288	140	50	160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 4) 민간분양 중 B-9, B-12, B-13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 5) A-4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 1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 6)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7)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8)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 9)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별표2]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변경)

구분	면적 (m ²)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주택유형	비고	
합계	1,881,307	42,534	106,362	-	-	-	-	-	-	
A-1	60m ² 이하	28,148	638	1,595	85	50	195	25	공공분양	-
	소계	22,558	620	1,551	-	-	-	-	-	-
A-2	60m ² 이하	14,888	409	1,023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7,670	211	528	80	50	220	25	신혼희망(통합공임)	
	소계	14,784	495	1,238	-	-	-	-	-	-
A-3	60m ² 이하	9,360	371	928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5,424	124	310	83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A-4	60m ² 이하	13,437	285	713	85	50	180	25	공공분양	-
	소계	15,318	546	1,366	-	-	-	-	-	-
A-5	60m ² 이하	10,110	421	1,053	48	50	200	25	통합공공임대	-
		5,208	125	313	83	50	200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42,051	1,156	2,891	-	-	-	-	-	-
A-6	60m ² 이하	27,754	763	1,908	80	50	22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14,297	393	983	80	50	220	25	신혼희망(통합공임)	
A-7	60m ² 이하	18,798	420	1,050	85	50	190	25	공공분양	-
A-8	60m ² 이하	28,815	712	1,780	85	50	210	25	공공분양	-
	소계	27,593	741	1,853	-	-	-	-	-	-
A-9	60m ² 이하	18,211	489	1,223	80	50	215	25	신혼희망(공공분양)	-
		9,382	252	630	80	50	215	25	신혼희망(통합공임)	
	소계	22,212	841	2,103	-	-	-	-	-	-
A-10	60m ² 이하	14,090	631	1,578	48	50	215	25	통합공공임대	-
		8,122	210	525	83	50	215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18,137	609	1,523	-	-	-	-	-	-
A-11	60m ² 이하	11,530	457	1,143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6,607	152	380	83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24,977	836	2,091	-	-	-	-	-	-
A-12	60m ² 이하	15,850	627	1,568	48	50	190	23	통합공공임대	-
		9,127	209	523	83	50	190	23	통합공공임대	
A-13	60m ² 이하	37,416	968	2,420	85	50	220	25	공공분양	-
A-14	60m ² 이하	26,602	626	1,565	85	50	200	28	공공분양	-
	소계	24,383	816	2,040	-	-	-	-	-	-
A-15	60m ² 이하	15,460	612	1,530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
		8,923	204	510	83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A-16	60m ² 이하	27,052	700	1,750	85	50	220	25	공공분양	-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A-17	60㎡이하	17,880	568	1,420	-	-	-	-	-	
		11,350	426	1,065	48	50	180	25	통합공공임대	
		6,530	142	355	83	50	180	25	통합공공임대	
A-18	60㎡이하	소계	20,043	671	1,678	-	-	-	25	-
		12,700	503	1,258	48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7,343	168	420	83	50	190	25	통합공공임대	
A-19	60㎡이하	41,459	1,024	2,560	85	50	210	30	공공분양	
A-20	60㎡이하	소계	40,896	961	2,403	-	-	-	-	-
		26,991	634	1,585	83	50	195	25	신혼희망(공공분양)	
		13,905	327	818	83	50	195	25	신혼희망(통합공임)	
A-21	60㎡이하	소계	19,084	739	1,848	-	-	-	-	-
		12,090	554	1,385	48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6,994	185	463	83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A-22	60㎡이하	소계	23,318	801	2,003	-	-	-	-	-
		14,800	601	1,503	48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8,518	200	500	83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A-23	60㎡이하	소계	21,054	779	1,948	-	-	-	-	-
		13,350	584	1,460	48	50	210	30	통합공공임대	
		7,704	195	488	83	50	210	30	통합공공임대	
A-24	60㎡이하	소계	26,755	602	1,506	-	-	-	-	-
		17,658	397	993	83	50	190	25	신혼희망(공공분양)	
		9,097	205	513	83	50	190	25	신혼희망(통합공임)	
A-25	60㎡이하	소계	20,124	709	1,773	-	-	-	-	-
		12,770	532	1,330	48	50	200	30	통합공공임대	
		7,354	177	443	83	50	200	30	통합공공임대	
B-1	60~85㎡이하	31,431	569	1,423	110	50	200	25	공공분양	
B-2	60~85㎡이하	34,012	587	1,468	110	50	190	25	공공분양	
B-3	60~85㎡이하	26,266	525	1,313	110	50	220	25	민간분양	
B-4	60~85㎡이하	21,872	388	970	110	50	195	25	공공분양	
B-5	60~85㎡이하	24,783	428	1,070	110	50	190	25	민간분양	
B-6	60~85㎡이하	38,807	706	1,765	110	50	200	25	민간분양	
B-7	60~85㎡이하	39,317	715	1,789	110	50	200	25	민간분양	
B-8	60~85㎡이하	20,574	411	1,028	110	50	220	30	민간분양	
B-9	60~85㎡이하	36,296	660	1,650	110	50	200	30	민간분양	
B-10	60~85㎡이하	25,369	507	1,268	110	50	220	30	민간분양	
B-17	60~85㎡이하	29,201	507	1,268	110	50	195	25	공공분양	

구 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C-1	85㎡초과	47,228	607	1,518	140	50	180	25	민간분양	-
C-2	85㎡초과	24,505	350	875	140	50	200	25	민간분양	-
C-3	85㎡초과	27,130	388	970	140	50	200	28	민간분양	-
C-4	85㎡초과	37,666	484	1,210	140	50	180	25	민간분양	-
소계		31,255	580	1,451	-	-	-	-	-	-
S-1	60~85㎡이하	20,628	413	1,033	110	50	220	25	민간분양	-
	85㎡초과	10,627	167	418	140	50	220	25	민간분양	
소계		37,916	624	1,560	-	-	-	-	-	-
S-2	60~85㎡이하	25,025	444	1,110	110	50	195	25	민간분양	-
	85㎡초과	12,891	180	450	140	50	195	25	민간분양	
소계		32,830	753	1,883	-	-	-	-	-	-
S-3	60~85㎡이하	16,415	425	1,063	85	50	220	25	공공분양	-
	85㎡초과	16,415	328	820	110	50	220	25	공공분양	
소계		35,134	622	1,556	-	-	-	-	-	-
S-4	60~85㎡이하	23,188	443	1,108	110	50	210	25	민간분양	-
	85㎡초과	11,946	179	448	140	50	210	25	민간분양	
소계		75,763	1,341	3,353	-	-	-	-	-	-
S-5	60~85㎡이하	50,004	955	2,388	110	50	210	25	민간분양	-
	85㎡초과	25,759	386	965	140	50	210	25	민간분양	
소계		49,682	712	1,781	-	-	-	-	-	-
S-6	60㎡이하	32,790	507	1,268	110	50	170	25	민간분양	-
	60~85㎡이하	16,892	205	513	140	50	170	25	민간분양	
소계		38,005	1,099	2,748	-	-	-	-	-	-
S-7	60㎡이하	16,220	659	1,648	48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
	60㎡이하	9,350	220	550	83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12,435	220	550	110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소계		33,816	627	1,568	-	-	-	-	-	-
S-8	60~85㎡이하	22,319	446	1,115	110	50	220	30	민간분양	-
	85㎡초과	11,497	181	453	140	50	220	30	민간분양	
소계		57,789	1,072	2,681	-	-	-	-	-	-
S-9	60~85㎡이하	38,141	763	1,908	110	50	220	30	민간분양	-
	85㎡초과	19,648	309	773	140	50	220	30	민간분양	
소계		32,649	605	1,513	-	-	-	-	-	-
S-10	60~85㎡이하	21,548	431	1,078	110	50	220	25	민간분양	-
	85㎡초과	11,101	174	435	140	50	220	25	민간분양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S-11	소계	29,071	546	1,365	-	-	-	-	-
	60㎡이하	14,536	308	770	85	50	180	25	공공분양
	60~85㎡이하	14,535	238	595	110	50	180	25	공공분양
S-12	소계	22,061	391	978	-	-	-	-	-
	60㎡이하	11,031	221	553	85	50	170	25	공공분양
	60~85㎡이하	11,030	170	425	110	50	170	25	공공분양
S-13	소계	29,664	400	1,001	-	-	-	-	-
	60~85㎡이하	19,578	285	713	110	50	160	25	민간분양
	85㎡초과	10,086	115	288	140	50	160	25	민간분양
S-14	소계	42,835	1,398	3,495	-	-	-	-	-
	60㎡이하	18,280	838	2,095	48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60㎡이하	10,550	280	700	83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14,005	280	700	110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S-15	소계	34,656	686	1,716	-	-	-	-	-
	60㎡이하	17,328	387	968	85	50	190	25	공공분양
	60~85㎡이하	17,328	299	748	110	50	190	25	공공분양
S-16	소계	31,948	511	1,278	-	-	-	-	-
	60~85㎡이하	21,086	364	910	110	50	190	25	민간분양
	85㎡초과	10,862	147	368	140	50	190	25	민간분양
S-17	소계	35,884	853	2,133	-	-	-	-	-
	60㎡이하	15,350	512	1,280	48	50	160	25	통합공공임대
	60㎡이하	8,800	170	425	83	50	160	25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11,734	171	428	110	50	160	25	통합공공임대
S-18	소계	36,886	1,067	2,668	-	-	-	-	-
	60㎡이하	15,750	640	1,600	48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이하	9,100	214	535	83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12,036	213	533	110	50	195	25	통합공공임대

구분	면적 (㎡)	건설 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
S-19	소계	34,428	610	1,525	-	-	-	-	-
	60~85㎡이하	22,722	434	1,085	110	50	210	25	민간분양
	85㎡초과	11,706	176	440	140	50	210	25	민간분양
S-20	소계	42,914	1,401	3,503	-	-	-	-	-
	60㎡이하	18,350	841	2,103	48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60㎡이하	10,580	280	700	83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13,984	280	700	110	50	220	25	통합공공임대
S-21	소계	28,770	941	2,353	-	-	-	-	-
	60㎡이하	12,400	568	1,420	48	50	220	30	통합공공임대
	60㎡이하	7,000	186	465	83	50	220	30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9,370	187	468	110	50	220	30	통합공공임대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민간분양 중 B-3, B-6, B-9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5) S-18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 1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6)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단,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경우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7)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8)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9)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주상복합(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 M-1 ~ M-10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80% 이하로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6조부터 제71조, 제3장 제312조부터 제316조, 제4장 제429조부터 제43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72조부터 제77조, 제3장 제317조부터 제321조, 제4장 제431조부터 제435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78조, 제3장 제322조, 제4장 제43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79조부터 제82조, 제3장 제323조부터 제326조, 제4장 제437조부터 제4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83조, 제3장 제327조, 제4장 제4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84조부터 제85조, 제3장 제328조부터 제329조, 제4장 제442조부터 제443조에 따른다.	

■ <별표3> 주상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 고
합 계		224,784	5,507	13,769	-	-	-	-	-	-
M-1	60~85㎡이하	25,295	662	1,655	107	50	350	-	민간분양	-
M-2	60~85㎡이하	19,305	406	1,015	114	50	300	-	민간분양	-
M-3	85㎡초과	19,219	371	928	145	50	350	-	민간분양	-
M-4	85㎡초과	21,327	412	1,030	145	50	350	-	민간분양	-
소 계		16,957	347	868	-	-	-	-	민간분양	-
M-5	60~85㎡이하	11,192	251	628	107	50	300	-		
	85㎡초과	5,765	96	240	143	50	300	-		
소 계		24,511	670	1,675	-	-	-	-	민간분양	-
M-6	60~85㎡이하	16,177	484	1,210	107	50	400	-		
	85㎡초과	8,334	186	465	143	50	400	-		
소 계		24,715	676	1,690	-	-	-	-	민간분양	-
M-7	60~85㎡이하	16,312	488	1,220	107	50	400	-		
	85㎡초과	8,403	188	470	143	50	400	-		
M-8	60~85㎡이하	17,887	535	1,338	107	50	400	-	민간분양	-
M-9	60~85㎡이하	40,701	1,046	2,615	109	50	350	-	민간분양	-
M-10	60~85㎡이하	14,867	382	955	109	50	350	-	민간분양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를 포함한 것임
 3)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 <별표3> 주상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변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 고
합 계		224,784	5,480	13,702	-	-	-	-	-	-
M-1	60~85㎡이하	25,295	644	1,610	110	50	350	-	민간분양	-
M-2	60~85㎡이하	19,305	421	1,053	110	50	300	-	민간분양	-
M-3	85㎡초과	19,219	384	960	140	50	350	-	민간분양	-
M-4	85㎡초과	21,327	427	1,068	140	50	350	-	민간분양	-
소 계		16,957	342	855	-	-	-	-	민간분양	-
M-5	60~85㎡이하	11,192	244	610	110	50	300	-		
	85㎡초과	5,765	98	245	140	50	300	-		
소 계		24,511	661	1,653	-	-	-	-	민간분양	-
M-6	60~85㎡이하	16,177	471	1,178	110	50	400	-		
	85㎡초과	8,334	190	475	140	50	400	-		
소 계		24,715	667	1,668	-	-	-	-	민간분양	-
M-7	60~85㎡이하	16,312	475	1,188	110	50	400	-		
	85㎡초과	8,403	192	480	140	50	400	-		
M-8	60~85㎡이하	17,887	520	1,300	110	50	400	-	민간분양	-
M-9	60~85㎡이하	40,701	1,036	2,590	110	50	350	-	민간분양	-
M-10	60~85㎡이하	14,867	378	945	110	50	350	-	민간분양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를 포함한 것임
 3)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5) 주거유형복합(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 유형 복합	LM-1 ~ LM-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 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의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9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7조부터 제9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9조부터 제10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5조부터 제10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9조부터 제110조에 따른다.		

■ <별표 4> 주거유형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 고				
합 계		70,664	509	1,274	-	-	-	-	-	-				
LM-1	저층형	85㎡ 초과	14,217	102	256	60	150	4	민간분양	-				
	중층형										17	43	198	2
	고층형										24	60	140	15
LM-2	저층형	85㎡ 초과	28,094	202	505	60	150	4	민간분양	-				
	중층형										34	85	198	2
	고층형										48	120	140	15
LM-3	저층형	85㎡ 초과	28,353	205	513	60	150	4	민간분양	-				
	중층형										34	85	198	2
	고층형										49	123	140	15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를 포함한 것임
 3)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자족복합(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복합	IM-1 ~ IM-5	용 도	<p>자족 시설 (5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p>기타 시설 (5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p>※ 주거기능의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40%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기타시설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기타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허용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둑, 사육,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22조부터 제12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29조부터 제134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3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36조부터 제13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3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40조부터 제141조에 따른다.			

■ <별표5> 자족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합 계	85,579	978	2,446	-	-	-	-	-	-
IM-1 60~85㎡이하	16,278	186	465	105	60	300	25	민간분양	-
IM-2 60~85㎡이하	23,033	263	658	105	60	300	25	민간분양	-
IM-3 60~85㎡이하	16,533	189	473	105	60	300	25	민간분양	-
IM-4 60~85㎡이하	20,119	230	575	105	60	300	25	민간분양	-
IM-5 60~85㎡이하	9,616	110	275	105	60	300	25	민간분양	-

- 주 1) 주거기능의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은 지상층연면적의 40%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
 2)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자족시설과 기타시설이 포함된 것임
 4) 층수산정시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5)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6)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 <별표5> 자족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변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합 계	85,579	933	2,334	-	-	-	-	-	-
IM-1 60~85㎡이하	16,278	178	445	110	60	300	25	민간분양	-
IM-2 60~85㎡이하	23,033	251	628	110	60	300	25	민간분양	-
IM-3 60~85㎡이하	16,533	180	450	110	60	300	25	민간분양	-
IM-4 60~85㎡이하	20,119	219	548	110	60	300	25	민간분양	-
IM-5 60~85㎡이하	9,616	105	263	110	60	300	25	민간분양	-

- 주 1) 주거기능의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은 지상층연면적의 40%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
 2)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자족시설과 기타시설이 포함된 것임
 4) 층수산정시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5)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6)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7) 공공복합(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 복합	PM-1 ~ PM-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의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이하로 함 ※ 주거외 용도의 경우 공공업무, 창업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등의 공공수요에 대하여 복합화를 권장함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54조부터 제16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1조부터 제166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68조 부터 제17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7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72조 부터 제173조에 따른다.		

■ <별표6> 공공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소계		59,245	1,727	2,762	-	-	-	-	-	-
PM-1	60㎡이하	14,194	414	662	60	60	250	25	행복주택	-
PM-2	60㎡이하	16,707	487	779	60	60	250	25	행복주택	-
PM-3	60㎡이하	19,006	554	886	60	60	250	25	행복주택	-
PM-4	60㎡이하	9,338	272	435	60	60	250	25	행복주택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를 포함한 것임
 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 <별표6> 공공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변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 고
소계		59,245	2,159	5,399	-	-	-	-	-	-
PM-1	60㎡이하	14,194	517	1,293	48	60	250	25	통합공공임대	-
PM-2	60㎡이하	16,707	609	1,523	48	60	250	25	통합공공임대	-
PM-3	60㎡이하	19,006	693	1,733	48	60	250	25	통합공공임대	-
PM-4	60㎡이하	9,338	340	850	48	60	250	25	통합공공임대	-

-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를 포함한 것임
 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 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8) 유보지(복합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유보지(복합형) 1	유보지(복합형) 2	유보지(복합형) 3	
유보지 (복합형)	RM1 ~ RM3	개념	· 실버케어, 원격진료 등 헬스케어 지원이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계획	· 도시남북축 녹색교통공간의 활성화 유도, 차세대 물류 서비스 제공 등의 용도로 계획	· 기존 결정된 체육공원 시설의 남양주시 추진을 우선반영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 ※ 남양주시 협의진행에 따라 용도변경 추후 결정	
		우선고려 용도	· 노인복지시설 등	·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등	· 운동시설	
		불허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3조부터 제184조, 제4장 제453조부터 제45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5조부터 제186조, 제4장 제455조부터 제456조 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5조, 제4장 제4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 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7조, 제4장 45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8조, 제4장 45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89조부터 제190조, 제4장 제459조부터 제460조에 따른다.			

주) 유보지(복합형)은 개발여건에 따라 우선고려 용도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 근생20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직업훈련소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단, 통합지하주차장 설치 시 27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99조부터 제200조, 제3장 제338조부터 제339조, 제4장 제469조부터 제47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01조부터 제204조, 제3장 제340조부터 제343조, 제4장 제471조부터 제474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05조, 제3장 제344조, 제4장 제47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06조, 제3장 제345조, 제4장 제47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07조, 제3장 제346조, 제4장 제47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08조부터 제210조, 제3장 제347조부터 제349조, 제4장 제478조부터 제480조에 따른다.		

10) 상업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 상업21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17조부터 제224조, 제3장 제356조부터 제357조, 제4장 제487조부터 제4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25조부터 제229조, 제3장 제358조부터 제361조, 제4장 제492조부터 제495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0조, 제3장 제362조, 제4장 제4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1조부터 제236조, 제3장 제363조부터 제366조, 제4장 제497조부터 제50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7조, 제3장 제367조, 제4장 제50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8조부터 제239조, 제3장 제368조부터 제369조, 제4장 제503조부터 제504조에 따른다.

■ <별표7> 상업시설의 용도 분류표

구 분	상업시설				
	C1 GTX역세권	C2 사릉역세권	C3 생활권지원	C4 남북중앙녹지축 배후	C5 남북중앙녹지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집회장 중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집회장 중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집회장 중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집회장 중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 (불안당 제외)	○ (불안당 제외)	○ (불안당 제외)	○ (불안당 제외)	○ (불안당 제외)
판매시설	● (도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제외)
의료시설	○ (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학교 제외)	● (학교 제외)	● (학교 제외)	● (학교 제외)	● (학교 제외)
노유자시설	X	X	● (아동 관련 시설 제외)	● (아동 관련 시설 제외)	● (아동 관련 시설 제외)
운동시설	○ (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	●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주차장, 세차장)	○ (주차장)	○ (주차장)	○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X	X	X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제외)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제외)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제외)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제외)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제외)

주 1) 용도 분류표에서 제외된 시설은 불허함

- 2) ● :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용도, X : 불허용도
- 3) 상업시설 내 도로변, 공원·녹지변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을 1층 전면부의 권장용도로 지정함
-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은 불허함
- 5)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6)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C1은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하로 하며, C4는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함

■ <별표8-1> 상업시설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상업시설					
	C1 (GTX역세권)	C2 (사릉역세권)	C3 (생활권지원)	C4 (남북중앙녹지축 배후)	C5 (남북중앙녹지축)	
해당블록	상업17-1~17-4, 상업18~상업19	상업20~상업21	상업13~상업16	상업9~상업12	상업2	상업1, 상업3~상업8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8층 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8층 이하

주)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단여단 정보작전처-6081)

■ <별표8-2> 상업시설의 오피스텔 건설호수

구 분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평균공급 면적(㎡)	용적률(%)	오피스텔 비율(%)	
합 계	82,153	2,103	45	500~800	15~20	
상업9	1	2,772	62	45	500	20
	2	2,912	65	45	500	20
상업10	1	2,600	58	45	500	20
	2	1,616	36	45	500	20
	3	1,616	36	45	500	20
상업11	1	2,099	47	45	500	20
	2	2,118	47	45	500	20
상업12	1	2,253	50	45	500	20
	2	2,220	49	45	500	20
상업17-1	10,821	289	45	800	15	
상업17-2	9,657	258	45	800	15	
상업17-3	8,373	223	45	800	15	
상업17-4	10,983	293	45	800	15	
상업18	1	6,437	172	45	800	15
	2	6,588	176	45	800	15
상업19	1	4,555	121	45	800	15
	2	4,533	121	45	800	15

주)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1) 업무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 ~ 업무4, 업무6	용 도	<p>주 용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p>부 용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불허 용도	<p>※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17조부터 제224조, 제4장 제487조부터 제4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25조부터 제229조, 제4장 제492조부터 제495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0조, 제4장 제4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1조부터 제236조, 제4장 제497조부터 제50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7조, 제4장 제50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8조부터 제239조, 제4장 제503조부터 제504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5	용 도	<p>주 용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p>부 용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p>※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87조부터 제4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2조부터 제495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7조부터 제50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3조부터 제504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7 ~ 업무10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절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폐 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 적 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및 건 축 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87조부터 제4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2조부터 제495조에 따른다.	
		경 관 및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 지 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7조부터 제50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 량 진 출 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 차 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3조부터 제504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1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p>※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p>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폐 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 적 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및 건 축 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87조부터 제49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2조부터 제495조에 따른다.	
		경 관 및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 지 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97조부터 제50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 량 진 출 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 차 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03조부터 제504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2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p>※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p>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폐 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 적 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및 건 축 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17조부터 제22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25조부터 제229조에 따른다.	
		경 관 및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 지 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1조부터 제23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 량 진 출 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 차 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38조부터 제239조에 따른다.			

■ <별표9-1> 업무시설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			
	업무1~업무3, 업무6~업무10, 업무12	업무4	업무5	업무11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 15층 이하	· 10층 이하	· 8층 이하

■ <별표9-2>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건설호수

구 분	획지면적(m ²)	건설호수(호)	평균공급면적(m ²)	용적률(%)	오피스텔 비율(%)	
합 계	91,918	1,335	45	300~400	20	
업무1	1	4,266	57	45	300	20
	2	4,338	58	45	300	20
업무2	1	4,812	64	45	300	20
	2	4,821	64	45	300	20
	3	4,822	64	45	300	20
업무3	1	3,472	46	45	300	20
	2	3,209	43	45	300	20
업무4	1	6,265	111	45	400	20
	2	6,316	112	45	400	20
업무5	1	6,028	107	45	400	20
	2	6,010	107	45	400	20
업무6	1	5,981	80	45	300	20
	2	5,327	71	45	300	20
	3	5,341	71	45	300	20
	4	5,308	71	45	300	20
	5	4,388	59	45	300	20
	6	4,028	54	45	300	20
업무12	1	3,600	48	45	300	20
	2	3,586	48	45	300	20

주)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2) 자족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1	용도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고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2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부수시설의 장폐식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불 허 용 도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3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8호 창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및 건 축 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 관 및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 지 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 량 진 출 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 차 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4 ~ 자족6	허용 용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 - 제18호 창고시설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7 ~ 자족8	허용 용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콜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8호 창고시설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9 ~ 자족10	허용 용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 - 제18호 창고시설 ·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11	허용 용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8호 창고시설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족 시설	자족12	용 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8호 창고시설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1조부터 제51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19조부터 제52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6조부터 제52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28조부터 제529조에 따른다.				

■ <별표10> 자족시설의 오피스텔 건설호수

구 분		획지면적(m ²)	건설호수(호)	평균공급면적(m ²)	용적률(%)	오피스텔 비율(%)
합 계		109,452	842	45	300~400	10
자족4	1	17,575	117	45	300	10
자족5	1	12,729	85	45	300	10
자족6	1	10,153	68	45	300	10
	2	9,230	62	45	300	10
	3	9,572	64	45	300	10
자족9	1	19,241	171	45	400	10
자족10	1	30,952	275	45	400	10

주)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3) 산업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산업1 ~ 산업3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허용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설치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36조부터 제5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9조부터 제55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51조부터 제552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산업4 ~ 산업12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중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중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허용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설치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36조부터 제5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2조부터 제546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49조부터 제55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51조부터 제552조에 따른다.		

14) 산업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지원 시설	지원1 ~ 지원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절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59조부터 제5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62조부터 제565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6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6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68조부터 제56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70조부터 제571조에 따른다.		

15) 산업복합(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복합	복합1 ~ 복합3	용도	<p>산업시설 (5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p>기타시설 (5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8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기타시설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기타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78조부터 제57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0조부터 제58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6조부터 제58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8조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복합	복합4	허용 용도	산업 시설 (5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기타 시설 (5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8호 운동시설(옥외절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기타시설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기타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둑,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78조부터 제57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 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0조부터 제583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4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6조부터 제58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88조에 따른다.			

■ [별표11] 산업복합의 오피스텔 건설호수

구 분	획지면적(㎡)	건설호수(호)	평균공급면적(㎡)	용적률(%)	오피스텔 비율(%)
합 계	71,391	952	45	300	20
복합1	14,899	199	45	300	20
복합2	25,601	341	45	300	20
복합3	30,891	412	45	300	20

주)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6) 기타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44조, 제3장 제374조, 제4장 제59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45조, 제3장 제375조, 제4장 제594조에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46조, 제3장 제376조, 제4장 제59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교통처리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247조, 제3장 제377조, 제4장 제59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학교	유, 초, 중, 고, 특	허용 용도	유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중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	
		보육 시설	보육1, 보육2	허용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문화1 ~ 문화4	용도	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직업훈련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공공 업무 시설	공공 업무1 ~ 공공 업무6	용도	허 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도서관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공공청사 편익시설
					불 허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커뮤니티 시설	K1 ~ K7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조·판매시설,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 <p>※ 부용도의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함</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종교 시설	종교1 ~ 종교10	용도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p>※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25m 이하)								
주차장	주1 ~ 주35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기계식 주차장 제외) ·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주17, 주28, 주33에 한함) <p>※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P1	P2	P3	P4	P5	
			해당 블록	주1~주2, 주4~주6, 주13, 주18, 주25	주3, 주8~주12, 주19~주24	주7, 주14~주17, 주26	주27, 주32~주35	주28~주31	
			건폐율	8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80%이하	
			용적률	320%이하	350%이하	450%이하	500%이하	800%이하	
			높이	4층이하	5층이하	8층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수소 충전소)	주유1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주유소	주유2 ~ 주유9 , 주유1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주유소 (수소 충전소)	주유10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집단 에너지 시설	열1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에 의거한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	
전기 공급 설비	전기1 전기2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의거한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	
전기 공급 설비	전기3 전기4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의거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	

17) 특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1 (변경)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1	지정 목적	· 경춘선 왕숙역(GTX-B정차) 예정지와 인근 상업·업무지구의 입체적 복합화 및 창의적 개발 유도 · 주거·상업·업무기능이 연계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역세권 활성화 도모 · 남양주왕숙지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복합역사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기정) 상업17-1~17-4, 상업18~19, 업무3~4, 공동주택(B18), 주상복합(M8, M9), 주차장30~31 및 공원, 녹지 도로 포함 (변경) 상업17-1~17-4, 상업18~19, 업무3~4, 공동주택(B10), 주상복합(M8, M9), 주차장30~31 및 공원, 녹지 도로 포함 · 지정면적 : 278,81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인 남양주왕숙지구의 랜드마크 역세권(경춘선 왕숙역(GTX-B정차) 예정지)의 활성화 도모, 효율적 환승체계를 마련하여 교통편리, 보행활성화 등 수단 간의 이동편의 증진 · 역세권 일원의 상업 및 주상복합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부 지구 단위계획 및 건축설계를 마련하고 사업시행 주체의 선정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통합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 강구 · 남북으로 연결되는 공원축과 연계하여 상업, 업무, 주거 및 문화공간을 복합화하고 저층부의 개방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보행활동 유도 · 경춘선 왕숙역(GTX-B정차)의 위치 변경 등 계획 구체화 시점에 적기 지구계획 변경 및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수단간의 환승계획 수립
	허용 용도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2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2	지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왕숙지구 중심부의 복합공간과 도시철도역사(예정지)를 연계 개발하여 중심부 랜드마크 형성을 위한 입체적·창의적 개발 도모 ·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행활동 및 여가문화공간으로의 개발 도모 · 문화공원 주변에 입지한 상업·업무시설, 문화시설, 도시철도역사(예정지) 등을 연계한 지하공간을 통합개발하고, 지하부에 주차공간 조성 등 지하공간 통합 활용 방안 마련으로 지상부의 차량통행 최소화와 차별화된 도시공간 조성 도모
	지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상업4~12, 공동주택(A18, S8), 주상복합(M4), 공공복합(PM2), 자족복합(IM2), 업무12, 문화시설3, 주차장(주16, 주17) 및 문화공원, 녹지, 도로 포함 · 지정면적 : 278,831㎡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업무, 자족, 주거 및 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왕숙지구 중심부의 도시철도역사(예정지)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중앙녹지축과 면하고 있어 활력있는 보행중심 역세권으로 개발 · 지하공간을 통합개발을 위해 지상의 도로와 공원 하부를 도로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여 지하공간에서 교차로 형성 및 개별필지의 차량 주출입구 확보, 주차공간 확보 등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상(안) 마련 · 상업시설 등의 개별 차량진출입구와 주차공간 제공이 지하에서 형성 시 지상 도로공간의 차로축소 및 보도확장 등을 통해 특화거리 조성으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미래형 역세권 공간 창출 · 문화공원과 면한 건축물은 저층부의 개방성 및 연속된 입면을 구성하고 상징가로의 도입검토 등과 연계하여 특화된 일단의 구역 조성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강구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3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3	지정 목적	· 도시철도역사(예정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자족·주거·상업·공공지원기능이 결합된 통합설계를 통하여 도시철도역사(예정지)와 연계된 복합공간 조성 · 왕숙천 및 용정천의 수변경관이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발 · 도시철도역사(예정지)의 입지에 따른 최적 계획(안) 마련으로 역세권 활성화 유도
	지정 개요	· 위 치 : 공공복합(PM1), 자족복합(IM1), 주상복합(M2), 상업1~3, 주차장(주7) 및 공원, 공공 공지, 도로 포함 · 지정면적 : 104,780㎡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 역세권에 상업, 자족, 주거, 공공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왕숙천 일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로경관 특화 · 왕숙천과 용정천을 따라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저층부의 개방감을 통해 하천으로 보행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필요
	허용 용도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4 (변경)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4	지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원 중심의 커뮤니티 생활권 및 통합된 건축물 경관 형성을 위한 일단의 계획 수립 ·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인접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시설 집적화, 공공시설의 공유를 통한 이웃간의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 민간분양,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다양한 주택유형의 Social-Mix 모델 제시
	지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기정) 학교(유, 초, 중, 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동주택(A17, A19, B13, B14), 커뮤니티4, 근린생활시설10, 주차장12 및 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 포함 (변경) 학교(유, 초, 중, 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동주택(A19, B3, S14, S17), 커뮤니티4, 근린생활시설10, 주차장12 및 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 포함 · 지정면적 : 263,48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중심으로 공원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일체감 있고 창의적인 단지로 조성되고, 커뮤니티 생활권으로 통합된 친육아환경 조성 · 단지내 보행로와 인접한 근린공원, 연결공원,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등이 통합계획으로 연결되어 일단의 마을 조성이 가능하도록 통합설계공모 또는 통합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강구 ·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교육기능을 풍부하게 하고 통학 및 체험학습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생활SOC를 우선 검토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5(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5	지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과 조화될 수 있는 중·저층의 주거형태가 결합된 저밀의 복합주거단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정주 공간 조성 · 다양한 주거형태가 동일단지 내에서 조성되고 건축물의 디자인 특화 및 창의적 설계를 통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
	지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주거유형복합(LM1, LM2) 및 공원 포함 · 지정면적 : 45,085㎡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숙천과 면한 용지로 기존의 단순한 주택 위주의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저층형, 중층형, 고층형의 주거형태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수변과의 조망과 연계성이 강화된 단지 조성 · 타 공동주택에 비해 낮은 용적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거용도는 연면적의 90%로 계획하고, 연면적의 10%는 근린생활시설과 수변과 연계된 공방, 헬스케어 등 특화된 부대복리시설 설치 유도 · 은퇴자주거 등 수변과 연계한 중대형주택을 선호하는 특정계층을 타겟팅으로 개발하는 제안공모 등 시행으로 다양한 주거유형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6 (변경)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6	지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왕숙지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제로에너지 및 스마트기술이 집약된 에너지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친환경 스마트단지 구축 · 다양한 유형의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기술이 실생활에서 활용되어 제로에너지도시가 실현되는 왕숙지구 도시이미지 형성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 및 친환경생태마을로 조성
	지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기정) 단독주택(R1-3~4), 공동주택(B6, S2, S4) 주차장 및 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포함 (변경) 단독주택(R1-3~4), 공동주택(S2, S4, S19) 주차장 및 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포함 · 지정면적 : 215,904㎡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도시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자립률의 목표량을 준수하여 특화단지 조성 ·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등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 · 하천(왕숙천, 용정천)과 연계되는 근린공원과 연결녹지를 연계하여 생태친화단지로 계획 · 근린공원4는 제로에너지 및 스마트기술이 실현되는 에너지특화공원으로 조성 ※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된 주택용지는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후 공급 가능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7(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7	지정 목적	· 사람이 모이고 걷고 싶은 가로와 형성되고 입주민을 배려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계획을 도모하여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 · 입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입주민 전체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계획요소 도입으로 왕숙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활성화 도모 (주차문제 해소, 개별 건축물 난립 경관 제어 등) · 원주민의 재정착 제고 및 신속한 입주를 위해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 단독주택(R2-4), 주차장(주25), 보육시설2 및 공원, 녹지, 광장, 도로포함 · 지정면적 : 82,227㎡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걷고싶은 가로만들기 - 이색적인 가로 조성을 위해 변화되는 건축지정선을 계획하고 이주자택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 단지의 내부 보행로는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휴먼스케일의 골목길을 형태의 가로를 조성하여 남양주왕숙지구 이주자택지만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보행로와 연계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단지내부 공원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 및 소통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원도심에서의 접근이 성을 고려한 진출입로를 계획을 통해 이주자택지 활성화를 도모 - 공동주택과 같은 생활SOC를 계획하여 이주자택지가 하나의 마을로서의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주민 편의성 향상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보행자중심공간으로 계획
	허용 용도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용적률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높이	· 해당용지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제7절과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제7절과 제2편 권역별(용지별) 시행지침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른다.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8)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